

19세기 巨濟 舊助羅里的 부세운영과 촌락사회의 동향*

宋亮燮**

I. 머리말	III. 진상·잡역의 운영과 촌락사회의 동향
II. 부세·잡역의 분정과 分洞·合洞	IV. 맺음말

• 국문초록

19세기 거제도 구조라리와 인근의 촌락들은 중앙과 지방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가해지는 각종 부담에 노출되어 있었다. 구조라를 비롯한 지역의 자연촌락은 행정편제에 편입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묶여졌는데 여기에는 수취단위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구조라와 인근의 촌락사회는 각종 부세·잡역을 항목별·물종별로 공동부담하였고 이는 관권의 개입과 압력을 일상화하였다. 표고진상을 둘러싼 갈등의 불합과정이나 홍합·미역에 대한 偷採·潛採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세역의 공동부담으로 묶여진 촌락군은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외부적 요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느슨한 협의체적 유대를 맺고 있었다. 한편, 가롱목물 운반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세역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치우침 없는 촌락 간 공정하고도 균평한 부담이었다. 이들 간 이해의 충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 조막역 분쟁을 둘러싼 집요한 등소운동은 구조라와 인근 마을이 활발한 정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철하고자 했음을 잘 보여준다. 관권의 침투는 개별촌락의 자율성을 저해하기도 하였지만 한편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호혜와 협동의 계보화,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 원리 과제로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AKSR2018-RC01).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으로는 이들이 파편화·원자화되지 않고 스스로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강력한 관권의 침투는 이에 대응한 동리간의 수평적 연대를 통해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창출해내고 이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일상적 정치문화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거제도, 구조라, 부세, 촌락, 진상, 잡역, 造幕役

I. 머리말

거제도 동부 연해에 위치한 舊助羅里(項里)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助羅鎭의 옛 소재지라는 의미로 마을 내부에는 구조라 성터의 모습이 지금도 완연하다. ‘(목을) 조르다’의 音借로 알려진 ‘助羅’와 장고나 사람의 목[項]과 비슷한데서 유래한다는 ‘項里’라는 명칭은 연해에 돌출된 포구마을의 지형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¹⁾ 그런가 하면 구조라는 북병산 기슭에 흠어져 있는 촌락군의 끝자락에 위치해 山村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바로 ‘山海之村’·‘山底浦邊’²⁾, ‘背山臨海’³⁾의 표현이 그것으로 구조라는 바다를 안고 산을 낀 독특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구조라를 중심으로 연해변에 동쪽으로 臥岷(臥逸串)·倭仇(曳龜), 서쪽으로 楊花·望峙 등의 마을이 활모양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들 촌락군은 생활권역을 같이 하면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갖가지 사안에 공동으로 대처해야하는 처지였다.

구조라 마을회관에 소장되어 있는 舊助羅里 文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사팀에 의해 발굴된 이후 이와 관련되어 적지 않은 연구가 발표되었다.⁴⁾ 우선 거제부의 행정·재정·부세와 도내 수군진의 실태를 살핀 후 호적중초의 분석을 통해 구조라 민의 생활상을 고찰하거나⁵⁾ 호적중초와 書目·完文 등에 나타나는 인물을 연결시켜 구조라 마을의 혼인과 양자입양 양상, 가족구조 등을 살핀 연구가 있다.⁶⁾ 한편 문서의 양식에 주목하여 구조라 문서군의 특성을 살핀 연구도 제출되었다. 구조라의 進上和 海稅의 공동납 실태가 完文·完議에 형식과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살피는 한편 旅客主人·漁條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마을 내 갈등과 분쟁이 구성원간 합의를 통한 完議의 작성, 그리고 等狀을 통한 관의 인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1) 정순우·안승준, 「거제도 구조라리 고문서와 그 성격」 『고문서집성』 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69면).

2) 「完文」(『고문서집성』 35, 570면).

3)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24면).

4) 정순우·안승준, 앞의 논문.

5) 김현구, 「조선후기 연해민의 생활상-18~19세기 거제부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8, 부경역사연구소, 2001.

6) 이종길, 「호적자료를 통해 본 조선후기 어촌사회의 가족관계-거제도 구조라 ‘항리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57,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이종길, 「19세기 巨濟島 ‘項里’ 漁村社會相에 대한 一考-‘巨濟島舊助羅’ 古文書를 중심으로」, 『장서각』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해결되고 있음을 밝힌 연구⁷⁾, 구조라의 동중완의의 문서 및 소통체계를 통해 洞中이 국가부담에 대해 수행하는 ‘능동적’ 기능을 살피고 마을 公議 형성과정에서 구성원 간에 나뉘는 ‘평등성’과 ‘공정성’의 원리가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⁸⁾가 그것이다.

이상의 연구는 여러 각도로 구조라를 중심으로 한 촌락사회의 운영양상을 고찰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들 연구의 상당수가 당시 호구파악과 부세운영의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자료가 가진 본연의 내용성이 충실히 드러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구조라 문서의 대부분이 호구 및 부세운영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그리 사소한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필자는 이미 구조라의 호적중초 분석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대민파악과 사회적 수준의 가계계승이 만나는 접점에서 幼學을 비롯한 직역의 변화양상이 종래 신분제 연구가 제시한 방향과는 별도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직역의 부과가 가계계승과 관련된 족적인 위상이나 결속력과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⁹⁾ 이같은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에서 구조라와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상·잡역의 분정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양상을 통해 촌락사회 운영의 일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 촌락사회는 그 자체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공동체적 규율이나 내적인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군현을 거쳐 면리단위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국가권력도 간과할 수 없는 규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밑으로부터 형성된 각종 결사·공동체적 조직은 촌락사회의 자기결속과 특징의 목적을 위한 것이 착종된 복잡한 내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 자연지리적 입지와 생활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된 자연촌은 나름의 방식으로 구획·조직되어 국가의 행정체제로 편입되었고 이 과정에

7) 전민영, 「18세기말~19세기 海村의 공동납운영 방식」, 『고문서연구』 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전민영, 「19세기 舊助羅里 마을 고문서와 공동생활 방식-旅客主人·漁條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8) 김혁, 「조선후기 ‘완의’ 문서의 특성과 그 사회적 기능-거제부 구조라리의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63, 역사실학회, 2017.

9) 송양섭, 「19세기 거제도 구조라 촌락민의 직역변동과 가계계승 양상-『항리호적중초』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서 위로부터의 관권과 밑으로부터의 촌락민이 만나는 접점에는 복잡한 갈등과 타협의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 가운데 부세운영을 매개로 한 국가권력의 침투는 촌락 공동체 내부는 물론 다른 촌락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했다.

19세기 거제에 부과된 각종 세역은 중앙과 지방의 각급기관에서 다양한 갈래로 가해졌는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조라를 비롯한 섬 동부 연안의 촌락군은 갈등과 연대를 거듭하면서 복잡하고도 독특한 사회상을 연출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홍합·표고 등 진상의 부담과 인근의 통영·수군진에서 내려오는 각종 세역에 노출된 구조라와 구조라를 둘러싼 촌락사회의 대응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왕조의 지배권력이 지역의 최하위 통치단위까지 관철되는 과정과 이와 관련된 촌락사회의 동향은 촌락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성의 독자적 양상 뿐 아니라 지역의 일상적인 정치가 가지는 구체적 내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Ⅱ. 부세·잡역의 분정과 分洞·合洞

1. 마을의 입지와 부세·잡역의 분정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거제도에는 인근에 위치한 통제영의 강한 영향력 하에 수군진과 각종 군사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로 부각된 데에는 멀리 임진왜란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왜란기 거제도를 둘러싼 해역과 인근의 도서들은 크고 작은 海戰의 무대이자 병참기지로 중시되었다. 유사시에 부산·동래가 내륙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목이었다면 거제도는 內海로 진입해 호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관문에 해당하는 자리에 위치하여 초기 적침을 저지할 수 있는 요충지로 평가받았다.¹⁰⁾ 전후 왕조정부가 이 지역 방어체제를 쇄신하고 각종 군사기구와 관방시설 구축에 주력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경상도 남해안 지역의 수군편제는 통제사 예하의 통우후가 中營將을 맡았으며 그 밑에 前司(파총; 가덕첨사)·左司(파총; 창원부사)·右司(파총; 적량첨사)·後司

10) 『승정원일기』 435책, 숙종 33년 5월 26일.

(파충; 미조항참사)와 함께 中司로 편제되었다. 中司의 파충이 바로 거제부사였다. 거제도에 소재한 수군 7진보 가운데 玉浦·知世浦·助羅浦는 中司의 前·左·右哨를 구성하고 栗浦·加背梁·長木浦는 각기 1領將의 後領과 2領將의 前領·後領을 담당하였다. 永登浦 萬戶는 左斥候將을 맡았다.¹¹⁾ 지역을 둘러싼 이같은 군사적 성격은 거제부의 행정과 지역민의 생활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지역사회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살펴보자.

〈표 1〉 18세기 말 거제부의 재정구조(미 환산)

구분	기관		액수(석)	비율
중앙 2604.4 (55.3%)	행정		7.8	0.2%
	재무		2465.6	52.4%
	군사		131.0	2.8%
지방 2101.7 (44.7%)	행정	거제부	826.5	17.6%
		감영	52.6	1.1%
		동래	135.3	2.9%
	군사	통영	809.0	17.2%
		수군진	269.2	5.7%
		우병영	9.0	0.2%
		김해진영	현물	
합계		4706.0	100%	

* 자료: 『부역실총』 거제

〈표 1〉은 18세기 말 거제부의 재정을 중앙상납분과 지방의 하납분·자체수용분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거제부의 중앙상납분은 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여타 군현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중앙상납분의 거의 대부분은 호조·선혜청·균역청과 같은 재무기관으로 귀속되는 전세·대동·균역세 등이었다. 지방의 경우 일반 행정기관과 군사기관이 각각 21.6%와 23.1%로 엇비슷한 비중이다. 행정기관은 거제부 자체의 수용분이 17.6%로 대종을 이루고 나머

지는 감영과 동래부 하납분이다. 군사기관은 통영이 17.2%로 가장 비중이 크고 예하의 수군진은 5.7% 정도이다. 우병영과 김해진영(현물)의 비중은 미미하다. 지방군사기관의 경우, 통영과 예하 수군진을 합하면 전체의 22.9%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 이같이 거제부의 재정구조는 타 지역과 유사한 중앙상납분의 비율을 보이면서 지방재정의 경우, 거제부의 자체수용분 외에 통영과 그 예하의 수군진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역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11) 『三道水軍統制使節目』 「三南舟師司哨分案」, 조선 후기 지역별 수군의 편제와 운영에 대해서는 송기중, 『조선후기 수군연구』, 역사비평사, 2019 참조.

한편 연해지역에 위치한 거제부의 특성상 홍합·표고 등 각종 진상물종의 부과는 지역민에게 커다란 부담이었다. <표 2>는 19세기 초 거제부의 진상물종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는 人蔘·天門冬·麥門冬·黑牛·藁古·紅蛤·全鰓·草席·乾海蔘·生靑魚·小鹽生鰓 등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홍합은 4월·11월·정월에 순영에서 보내고, 7월에는 상주도회에서 朔膳進上으로 중앙에 상납하였다.

〈표 2〉 19세기 초 거제부에 부과된 진상물종

물종	액수	加額	都會	납부기한
人蔘	0.26兩			10월3일
天門冬	2兩		순영	10월3일
麥門冬	4兩			10월3일
黑牛	5首		황간	6월
藁古	2斤	4냥		3월10일
藁古(8月朔膳)	1斤8兩	3냥	순영	7월10일
乾紅蛤(4月朔膳)	2斗4刀	3刀		3월10일
乾紅蛤(7月朔膳)	3斗5刀	2刀	상주	6월15일
乾紅蛤(11月朔膳)	2斗	2刀		10월10일
乾紅蛤(正月朔膳)	2斗	4斗		12월10일
全鰓(中宮殿誕日物膳)	1貼	1串	순영	3월3일
全鰓(端午物膳)	5串	1串		4월8일
草席(五月朔膳)	6立			4월10일
全鰓(6月物膳)	2貼5串	3串	안동	5월15일
全鰓(大殿誕日朔膳)	2貼5串	2串		5월25일
全鰓(大王大妃殿誕日物膳)	2貼	1串5箇	순영	10월10일
乾海蔘(8月朔膳)	2斗5刀	1刀		7월10일
全鰓(王大妃誕日物膳)	1貼	1串5箇		1월4일
生靑魚(宗廟薦新)	23尾	2미	창원	10월10일
全鰓	7貼	2곳		
小鹽生鰓	270箇			
乾海蔘	8斗	4도	순영	

* 자료: 『巨濟邑志』

이들 진상품은 朔膳·誕日物膳·端午物膳·薦新 등의 명목으로 순영(감영)에 대부분 납부되고 있으며 일부가 황간·상주·안동·창원 등 도회소를 거쳐 서울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납부기한은 1월·3월·4월·5월·6월·7월·10월·12월로 사실상 연중 내내 지속되고 있다. 연유는 알 수 없지만 ‘加額’의 형태로 앞시기 어느 시점에 적지 않은 액수가 추가된 점도 눈에 띈다. 어쨌든 이만한 액수의 진상품종이 산지에 따라 面里에 分定되던 것이다. 이 가운데 구조라와 직접 관련되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표고와 홍합이었다(후술).

구조라에 부과되는 부세 중 중앙상납분은 정해진 방식에 의해 거제부사의 책임 하에 수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군역의 경우, 중앙의 군문과 각급기관의 군액은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마을민은 대부분 지세포·조라포·옥포 등 3개 수군진의 군역·신역을 가지고 있었다.¹²⁾ 마을민 스스로 ‘鎮下項里居民’¹³⁾이라 칭했고 이들이 ‘府와 鎮의 兩界에 얹매여 있’¹⁴⁾다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鎮下村의 특성은 마을의 운영과 마을민의 생활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¹⁵⁾

구조라의 『洞錢俵殖記』에는 마을 차원의 동전 지출 항목이 소상히 정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각급기관에서 부과되는 층위별 잡역과 동종의 자체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우선, <표 3>을 통해 19세기 전반 거제부를 비롯하여 감영·우병영·통영·수군진 등 지역의 각급기관으로부터 배정된 갖가지 항목의 세역을 살펴보자.

12) 송양섭, 앞의 논문.

13) 『鎮下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56~557면).

14)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8면).

15) 지역에는 助羅場·九川場·栗浦場·知世場 등 4개의 목장이 있었는데 구조라를 비롯한 양화·망치·와현·왜구·학동·갈곶 7개 마을은 ‘一場之民’으로 감목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부담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每員 草價 1升1合~1升8合, 任債錢 38냥 등이 확인된다(『巨濟助羅場民書』(『고문서집성』 35, 507면); 『등장』(『고문서집성』 35, 562면; 『완문』(『고문서집성』 35, 593~594면)). 여기에는 목장둔전이 있었는데 1901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둔전 321결 43부 8속 내에서 加助島結 42결을 제한 279결 43부 8속 가운데 時起原摠은 227결 31부 2속이었다(이 중 10결 10부 7속은 내장원 賭結). 여기에 ‘追查升總’ 32결을 더하면 총수는 田 190결 42부 9속, 畓 127결 99부로 이로부터 거두는 賭錢은 18,770.45냥에 달했다(『辛丑十月日西四場賭稅錢文結總記』(『고문서집성』 35, 377~380면)).

〈표 3〉 19세기 전반 구조라의 잡역

기관	항목	액수/부담방식	기관	항목	액수/부담방식
거 제 부	官主新舊交遞修理役	5냥	통영	兵伺候船加龍役事	戶數에 따라 시행
	支裝錢	戶數에 따라 분배		邑一二戰船修補時松板役事	
	靑花紙物價	0.4냥		鎭匠鎭甲鎭租	호당 1刀
	生眞角代	0.7냥		統上營軍牢棍木代	년 1냥
	藿稅錢并後	11.3냥		統中營軍牢棍木代	년 5전
	藥漢例年	5두		倭船支供	
	每年戶數修正時風惠例給	2냥	우병영	晉州兵營納弓槩木	분기별 1.76냥
	書役所例給紅給	2두	知世鎭 玉浦鎭 助羅鎭	内外島搜討支供	
	戶籍有司例給	2냥		知玉助三鎭供饋	
	懸列庫本錢	4냥		知鎭春秋還上受來錄	春還 2석/秋還米 1석
	邑先生聘儀錢冬等本錢(3냥) 兩等利錢(3.75냥) 夏等本錢(2냥) 夏等利錢(1.5냥)	10.25냥		知世鎭統營八戰船加龍載運	4洞이 차례로 施行
	客舍海灰本錢	5.5냥		知世鎭式年改都案淸債	2냥
	千吾長名下防給錢	8.25냥		知世鎭松境冒耕債	1냥(冒耕田主當)
				知世鎭植松債一兩山下	田主當
				知世鎭式年松境改都案債	2냥(洞中이 부담)
감영				船所椽木	연1차
	巡營納冊板	5立	기타	出身乞立錢	1인당 0.3냥
	巡營納裝頭木	4介		驛下人乞立錢	1인당 0.15냥
	統營紋木裨將錢	1인당 1냥		山糧米	매년 戶數에 따라 담당

* 자료: 『동전표식기』(『고문서집성』 35, 96~111면).

첫째 거제부사의 교체시 관사수리 비용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이는 官主新舊交遞修理役 5냥을 들 수 있다. 그 세부항목은 海灰 3石, 大懸板 2立, 紅氈介 3介, 防麻致 3介, 馬板 3立 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식리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客舍海灰本錢 5.5냥이 별도로 배정되어 민간에 분급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액수는 불명이지만 역시 거제부사 교체시 비용으로 보이는 支裝錢이 배정되어 호수에 따라 거두도록(從戶數分排) 규정되어 있었다. 다음은 靑花紙物價 0.4냥, 生眞角代 0.7냥, 藿稅錢并後 11.3냥, 藥漢例年 5두(1801년 8월 혁파) 등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紙物과 약

재·식품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그 다음은 每年戶數修正時風憲例給 2냥(勸農例給 0.5냥 포함), 書役所例給紅蛤 2두(매년), 戶籍有司例給 2냥(卜人代紙價 0.5냥 포함) 등 호적개수와 관련된 비용들이다. 다음은 식리전이다. 무열고는 19세기초 각종 공용과 표류왜인의 지공을 위해 만든 民庫의 하나로 본전 4냥이 배정되어 1844년 9월 민간에 분급되고 있었다.¹⁶⁾ 부의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邑先生賻儀錢冬等本錢 3냥도 함께 배정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무열고 감관이 관리한 듯 하다.¹⁷⁾ 千畝長名下防給錢 8.25냥(本錢 5.5냥 + 利錢 2.75냥)은 용도가 불분명한데 그 관리는 約正 金尙元이 담당하고 있다.¹⁸⁾

다음은 도내 행정·군사기관으로부터 부과되는 항목이다. 대구감영과 진주 우병영에서 거두는 명목이 있으나 액수는 그리 많지 않았고 대종을 이루는 것은 통영과 지세포·옥포·조라포 3진에서 부과되는 각종 잡역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군사기구에 소요되는 인건비·선박·군기·장비·시설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代錢納 형태가 많았지만 力役形態의 부담도 적지않았다. 가령 통영에서 부여한 倭船支供役은 陶藏浦나 舊助羅浦에 일본선박이 표류하여 止泊할 경우 項里·望峙·楊花·倭仇 4洞이 合議하여 支供하는 것이 오랜 규례였다. 3진의 内外島搜討支供과 三鎭에 대한 供饋, 知世鎭과 統營八戰船의 加龍載運役도 마찬가지였다.¹⁹⁾ 노동력을 징발하는 형태의 잡역은 촌락민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저희들이 사는 땅은 극변의 한 모퉁이에 처해있어서 邑鎭의 요역이 다른 곳에 비해 홀로 편중되게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對馬島와 서로 바라보고 있어

16) 무열고에 대해서는 김현구, 「18·19세기 거제부의 해세운영과 민고」, 『부대사학』 19, 부산대사학회, 1995 참조.

17)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844년 당시 무열고 감관이었던 망치리 거주 李益哲은 邑先生賻儀錢冬等本錢과 冬等本錢 그리고 이에 딸린 이자를 합하여 10.25냥을 거제부에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8) <표 3>에 나타난 항목 외에도 구조라와 인근 마을에 부과되는 잡역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1852년 官納廣魚의 경우 광어 8숙, 대구 9숙이 4개 마을 포구에 부과되었는데 마을별 내역은 구조라에 광어 3숙 3미, 대구 3숙 5미, 망치에 광어 2숙 4미, 대구 2숙 6미, 양화에 광어 9미, 대구 1숙 1미, 왜구에 광어 1숙 4미, 대구 1숙 8미 등이었다(『동전표식기』12(『고문서집성』 35, 96~111면)).

19) 『동전표식기』(『고문서집성』 35, 96~111면).

표류한 倭船의 來泊이 朝夕으로 있으니 凋殘한 民力으로 頭民의 守護·策應 업무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또한 통영 소관의 搜討를 돌아가면서 담당하여 知世浦·玉浦·助羅浦 3鎭의 차례에 따른 巡邏가 없는 날이 없으니 관장하는 諸島를 출입할 때 船舶이나 沙格이 없으면 폐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漁民이 失稔하는 것도 이러한 폐단과 관계가 있으니 애통합니다. 殘里가 실 틈이 없습니다.²⁰⁾

구조라 마을민들은 표류한 일본 선박을 구호하는 임무에 시달리는 것, 그리고 지세포·옥포·조라포 3진이 연해 도서(내·외도)를 搜討할 때 뒷바라지에 동원되는 것을 특별히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다.²¹⁾ 통영과 인근 수군진으로부터 가해지는 각종 잡역 가운데 왜선구호와 수토 뒷바라지와 같이 직접 인력을 동원하는 잡역은 구조라민의 삶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빈번하게 지적되었다. 한편 구조라에는 마을자체의 지출도 확인된다. 마을자체의 지출은 여러 가지였지만 『동전표식기』에서 확인되는 내역 중 대부분은 洞別神祭와 관련된 항목이었다(〈표 4 참조〉).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지는 거제·통영 지역의 별신제는 구조라를 비롯해 죽림·다대·수산·망치·늦태 등에서 연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대체로 유교제사를 巫敎로 풀어간 방식을 취하고 있다.²²⁾

〈표 4〉 구조라 마을의 洞別神祭 지출 항목

항목	액수	항목	액수
白米	10斗	船主別給	0.5냥
曲子	2.1斗	客鬼別給	1냥
租	1斗	鬼農別給	0.5냥
白紙	10卷	萬后僧別給對舞并	1.2냥
白木	4尺	摘鬼對舞并	1.5냥
場所入	從時價	別神竹新立則告祀債	1냥
元補手	5냥	姑未狂大別給	0.5냥
工人給条	3냥	款客例給	1냥

* 자료: 『동전표식기』12(『고문서집성』 35, 96~111면).

20)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55면).

21) 이 지역은 대마도 북쪽 와니우라(鰐浦)와 사스나(佐須奈)에서 동래부 초랑 왜관에 이르는 항로가 지나갔고 이 때문에 이를 오가던 일본선박이 태풍이나 해난사고로 거제도 동부해안에 표착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정성일, 「조선의 대일관계와 거제사람들-1830~80년대 거제부 구조라(항리) 주민의 대마도 난파선 구호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여기에는 제사에 소요되는 술·떡·밥 등을 만들기 위한 백미(酒米4.5두+餅米2.5두+竹齋米0.5두+飯米2.5두) 이외에 釀酒를 위한 곡자를 비롯한 제반 비용, 그리고 별신제 연행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같이 동중의 자체적인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는 항목이 별신제와 관련된 각종 물자와 인건비라는 점은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다. 군사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거제도와 이에 속한 구조라는 전체적으로 타 군현과 비슷한 재정구조를 가지면서도 인근의 통영과 예하의 수군진으로부터 가해지는 각종 세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홍합·표고 등을 비롯한 진상의 부과는 연중 지속되었거니와 이는 면리별로 분정되어 구조라까지 내려왔다. 이는 구조라가 거제부의 행정구역에 있으면서도 인근의 통영과 수군진의 강력한 자장 안에 있는 鎭下村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행정관서인 거제부·감영에서 부과되는 각종 잡역 외에 통영과 수군진에서 내려오는 부담 가운데 표류한 일본 선박에 대한 구호작업과 내·외도 수토에 대한 뒷바라지는 특히 과중한 부담으로 구조라민의 삶을 크게 압박했다. 구조라 자체의 지출 항목으로는 구성원의 결집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 차원의 의례행위인 별신제에 대한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 면리편제와 分洞·合洞의 양상

구조라는 邑內東部·邑內西部·屯德·沙等·古縣一運·古縣二運·延草·河淸의 8개면 가운데 고현일운면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농토가 부족하여 마을민 대부분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했던 구조라는 흥어기가 닥치면 침을 캐서 연명한다고 할 정도로 빈한했다.²³⁾ 이 과정에서 생활공간으로서 입지조건과 혈연 등을

22) 별신제와 함께 지동굿도 연행되었는데 여기에는 마을의 각종 문서가 보관된 지동께가 놓여졌다. 문서에는 조상들의 성명이 담겨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을민들은 이를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정서가 있었고 이러한 전통은 지역의 마을문서가 하나의 기록군으로 보존되는 결과도 가져왔다고 한다(이훈상, 「19세기 중엽 이후 거제 통영 지역의 별신굿 연행과 기록문화전통의 창출」,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016).

23) 『거제부읍지』(1860~1862);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24면). 1910년 조사에 따르면 거제군 일운면의 총인구 5,536명의 직업구성은 관공리 1명, 양반 9명, 유생 2명, 상업 48명, 농업

매개로 자리잡은 자연촌락은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여지는데 바로 군현제와 그 하부를 구성하는 面里的 편제이다. 오가통으로 묶인 洞里는 면의 행정편제에 포섭되면서 지배체제의 말단을 구성하게 된다. 구조라를 비롯하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연촌은 상황에 따라 성쇠를 반복했을 것으로 짐작되거나와 이는 면리편제를 통한 촌락파악에도 어느 정도 투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 이래 진행된 대대적인 촌락사회 재편으로 면리제는 종래 방위면 밑에 있던 洞里가 새로운 면으로 등장하면서 분리·통합이 나타나거나 방위면이 각각 몇 개의 里로 새롭게 편제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²⁴⁾

〈표 5〉 거제부의 행정편제와 坊里數의 변화

1789년		1832~1895년		1899년		1912년	
面	里數	面	里數	面	里數	面	里數
邑內面	26	邑內面 東部	14	東部面	27	東部面	21
		邑內面 西部	7	西部面	12	西部面	14
屯德面	20	屯德面	7	屯德面	18	屯德面	17
沙等面	7	沙等面	6	沙等面	15	沙等面	10
古縣面	23	古縣面 一運	11	一運面	22	一運面	21
		古縣面 二運	10	二運面	18	二運面	18
延草面	14	延草面	12	延草面	18	延草面	18
清河面	28	河清面	16	河清面	14	河清面	14
				外浦面	8	外浦面	8
				長木面	11	長木面	10
				閑山面	14		
	118		83		177		151

* 자료: 『호구총수』(1789); 『거제부읍지』(1832); 『거제읍지』(1860~1862); 『거제읍지』(1899);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

901명, 어업 39명, 공업 9명, 일가 53명, 기타 4명의 분포를 보이는데(内部警務局, 『民籍統計表』, 1910) 이는 일운면의 대다수 주민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나타나는 상업과 어업은 아마도 구조라와 같은 연해지역 촌락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4) 김준형, 「조선 후기 면리제의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27~30면.

18~19세기 거제의 면리편제는 <표 5>와 같다. 18세기말 118개였던 거제부의 里數는 19세기로 접어들어 83개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²⁵⁾ 里數(坊數)의 감소현상은 전체 면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반면 面數는 읍내면이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지고 구조라리가 속한 고현면도 일운과 이운으로 分面되어 6개면이 8개면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면 내부의 동리편제에 일정한 조정이 이루어진 듯 하다. 지방제도 개혁 이후인 1899년에는 外浦·長木·閑山 3개면이 추가로 독립하고 방리수도 83개에서 177개로 배 이상 늘어난다.²⁶⁾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는 11개면이 10개면으로 줄어들면서 동리수도 151개로 감소한다. 어쨌든 지방제도 개혁은 이같이 面數는 물론 동리수의 대대적인 재편을 가져왔던 것이다.

범위를 좁혀 구조라(항리)가 속한 고현일운면의 동리파악 추이를 보면 일단 1789년 10개에 불과하던 동리수가 11개가 되었다가(1832~1895) 1899년 22개로 크게 늘어나고 일제강점기인 1912년까지 21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구조라(항리) 인근에 위치한 왜구·와현·망치·양화 가운데 왜구는 18세기말 파악에서 빠져있고 와현은 1895년이 되어서야 면리편제에 들어온다(1917년 항리 명칭 구조라리로 변경. 망치·양화는 망치리로 통합). 왜구와 와현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온 자연촌락이었을 테지만 독립된 행정리가 되기에는 무언가 불안한 부분이 있었던 듯하다.

이러한 동리의 편제 변화가 호구수의 추이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거제의 호총과 구총의 추이를 보면 18세기 호총 5,000, 구총 24,000 수준에서 19세기 접어들어 각각 6,000, 31,000대를 유지하다가 1880년 호총은 7,509호에서 3,698호, 구총은 31,281구에서 13,958구로 큰 폭으로 감소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구조라의 경우도 호총 73(1863)→69(1881)→67(1884)→41(1887)→43(1890)→42(1893), 구

25) 1879년 『호구총수』의 파악은 그리 정확하다고 보기 힘들다. 면이 7개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6개만 기재되어 있고 里數도 122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18개리만 실려 있다. 河淸面도 淸河面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26) 외포면은 德上·德下·柳洞·矢方·利湖·大今·寶谷·栗川 등 8개 방, 長木面에는 長木·冠浦·松眞·黃浦·舊九·上柳·農所·宮農·頭毛 11개 방이, 한산면에는 竹島·山達·秋元·蜂巖·美浦·比珍·頭億·東佐·西佐·倉洞·梅洞·荷浦·龍草·胡頭 등 14개 방이 편제되었다. 유일하게 방리수가 줄어든 하청면은 猪島·黃浦·柳浦·舊永登·農所浦·這浦·長木浦·舊栗浦·大今山·矢方·漆川島·絲外浦·已串·內加耳·外加耳·河淸 등 16개 방리가 石浦·德谷·海安·外上·外下·河淸·河九·實田·長串·於溫·松浦·大谷·蓮九·飡浦 등 14개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서 방리명이 일치하는 것은 하청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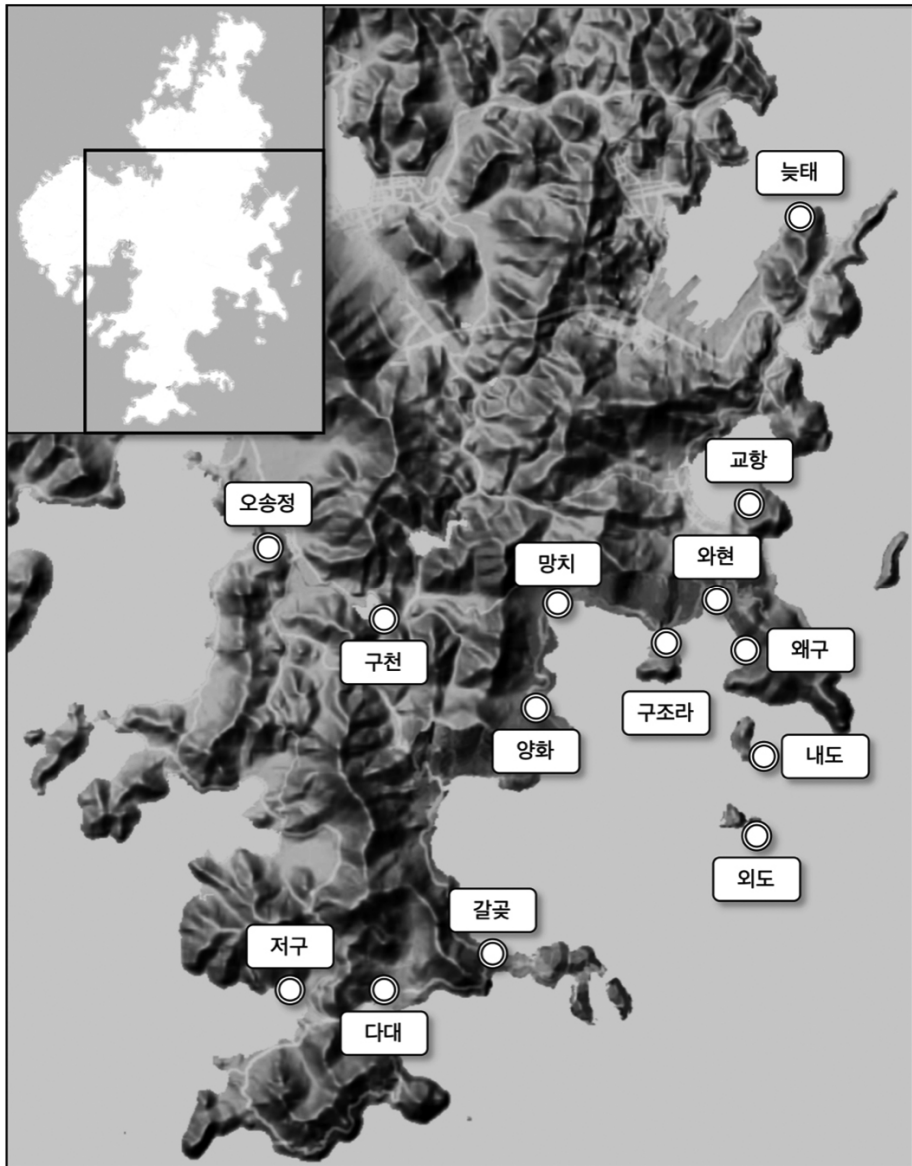
총 247(1863)→212(1881)→211(1884)→113(1887)→122(1890)→125(1893)의 추이를 보인다.²⁷⁾ 이러한 호충과 구충의 추이는 19세기말 급격히 늘어나는 里數의 추이와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의 면리재편이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촌의 성장 때문이 아님을 보여준다. 면리편제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역에 가해지는 부세압력과 관련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다음은 구조라와 그 이웃에 위치한 왜구리의 1844년 상황이다.

오직 이 項里(구조라리)와 倭仇가 邑·鎭의 두 경계에 끼어 있어서 온갖 요역을 두 갈래로 策應하니 그 苦歎함을 말할 것 없는데 거주하는 지역이 또한 산밭의 浦口주변이기 때문에 진상 표고와 홍합 등의 물종을 備納해야합니다. …… 떠나는 사람이 많고 거주하는 사람은 적으니 洞의 모양이 해마다 쓸쓸해지고 민력이 날마다 조잔해져서 蒼居責役의 형세가 없어서 전에 두 里가 지금 한 洞이 되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또 罪人을 供饋하도록 하니 이 백성의 곤란함이 자못 거꾸로 매달린 것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약자를 구제하고 넘어진 사람을 붙잡아주는 길은 이 두 界가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이에 백성들의 간절함에 따라 계방을 만들어 정비되인 한 가지 사안은 영구히 權減한 후 完문을 성급하여 이것으로 영구히 준행하며 소위 稷儀는 7냥으로 定數하여 이는 매년 초 來納하는 것이 의당할 일²⁸⁾

구조라는 온갖 잡역이 거제부와 수군진으로부터 가해지는데다가 표고와 홍합 진상으로 인해 마을이 피폐해져 1844년 이전 그리 멀지않은 시점에 인근의 왜구리와 舍洞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요역과 진상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했고 여기에 새롭게 정비되인 공궤의 부담이 추가되자 이들 두 마을은 형방과 계방을 결성, 매년 7냥의 계방전을 납부하여 이를 면제받고자 했던 것이다. 舍洞이 되었다하더라도 두 마을의 자연촌으로서 독립성을 훼손하지는 않은 듯 두 마을이 계방을 맺는 과정에서 著名한 것은 각 마을을 대표하는 鄭아무개와 俞아무개였다. 다음은 1848년 구조라이임이 거제부사에게 올린 서목이다.

27) 김현구, 앞의 논문, 2001, 52~53면; 송양섭, 앞의 논문, 2014, 126~128면.

28) 『완문』(『고문서집성』 35, 570면).



〈그림 1〉 거제도 동남부의 주요 촌락 분포

本里(구조라)와 왜구가 合洞했을 때는 供上 冬栢 2斗를 例納하다가 수 십 년 전 分洞한 후 각기 1두씩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본리는 금년조 1두를 이미 맡아서 납부하였는데 지금 다시 뽑으니 그 委折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세히 조사하여 勿侵할 뜻을 연유로 하는 일입니다.²⁹⁾

왜구는 구조라와 합동과 분동을 거듭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동시에는 구조라가 공상동백 2두를 납부하다가 분동 후에는 부담이 각기 1두로 나누어졌던 것이다. 이때 거제부의 행정착오로 합동시의 부담액이 부과되자 구조라 이임은 그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거제부사는 이를 받아들였거니와 이를 통해 분동과 합동이 부세부담의 독립적 단위로 유지되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군역의 闕額代定은 洞中の 중요한 업무로 里任·洞任은 代定者의 파악, 里內의 軍丁實態를 수시로 관에 보고하고 있었다. 왜구와 合洞한 상태에서 1851년 구조라 里任은 防軍 情錢을 抄出하면서 사망하여 탈급할 자와 중복된 자를 ‘원래 없었던 자(李京煩 외 3명)’, ‘없어진 지 10여 년 된 자(尹宗伊 외 8명)’와 함께 倭仇里 거주자로 高尚哲 외 7명을 함께 보고하고 있다.³⁰⁾ 里代定은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궤액에 대한 代定을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구조라 이임이 合洞된 왜구리의 상황까지 보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후 다시 分洞되었던 왜구리는 1877년 무렵 다시 사정이 나빠진 듯 다시 ‘破洞’되어 구조라와 合洞되는데 이 때에도 왜구리가 담당하던 각종 烟役이 구조라로 移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구조라의 「各樣烟役移錄本里抄」에 나타나는 항목은 ① 進上紅蛤 3合, ② 供上紅蛤 1斗, ③ 官廳藿 6丹, ④ 藿稅錢 2兩5錢, ⑤ 朴尙才名下藿稅錢, ⑥ 柳德九名下藿稅錢 등이다. 이 가운데 구조라리의 부담이 된 것은 ①~④ 항목이고 ⑤는 망치와 양화가, ⑥은 구조라와 왜구 두 마을이 나누어 담당한 듯 하다.³¹⁾ 구조라의 관청과 부담은 18단으로 1868년에 확인되는 액수와 동일한데 그 내용은 원래 구조라 부담 12단에 합동된 왜구리의 6단이 합해진 것이었다.³²⁾

29) 『項里里任書』(『고문서집성』 35, 518면).

30)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27면). 구조라의 闕額代定과 里定法の 적용에 대해서는 송양섭, 앞의 논문, 2014 참조.

31) 『동전표식기』(『고문서집성』 35, 96~111면).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인근의 또 다른 마을인 와현·교항 두 마을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구조라를 비롯한 지역의 촌락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또 하나의 부담은 경내에 표류한 일본선박을 구호하고 지공하는 역이었다. 1872년 倭船守護役을 둘러싸고 와현리와의 畝洞이 논란이 되자 거제부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다.

臥峴은 舊助羅·橋項 두 마을 사이에 있어 구조라에 합하기도 어렵고 橋項과 나누기도 어려우므로 각기 洞名을 남겨 그 役을 복구시키는 것만 못하다. 倭船守護의 役도 1차는 구조라와 役을 함께 하고 1차는 교항과 함께 돌아가면서 거행하면 교항도 손해를 보는 탄식이 없고 구조라에게도 同助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臥峴으로 말한다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相救共濟之義가 될 수 있으므로 완문 3장을 成出하여 3리에 분급하고 이것으로 永遵施行하여 다시 煩訴의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宜當하다.³³⁾

아마도 와현리는 이 시기 교항리와 사실상 畝洞된 상태였던 듯 하다. 하지만 구조라가 단독으로 역을 부담하기에 벅찬 형편에 처하자 와현은 실질적으로는 교항과 畝洞된 상태에서 洞名을 그대로 두고 역을 담당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종의 절충안으로 와현이 다른 촌락과 동등하게 역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왜선수호역을 한번은 구조라, 한번은 교항과 함께 담당하도록 한 것이었다. 교항의 입장에서 畝洞한 채 격 1회 역을 담당하므로 손해 볼 것이 없고 구조라도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와현리는 교항·구조라와 ‘相救共濟’의 우의도 다질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침내 1873년 1월 왜선지공의 부담을 구조라·망치·양화·왜구·와현 5개 마을이 공동으로 맡되 와현리는 2차례 가운데 1번만 역을 수행할 것을 합의했다. 이 때 著名한 마을 대표는 4개동이 洞首였고 와현만 頭民 金大業이었던 점도 특이하다.³⁴⁾ 왜선지공 문제에서 보듯 생활공간으로서 자연촌과 별개로 행정적 동리편제는 역의 부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畝洞·分洞을 거듭하고 있었다.

32) 『동전표식기』(『고문서집성』 35, 96~111면).

33) 『項里完文』(『고문서집성』 35, 576~577면).

34) 『五洞節目』(『고문서집성』 35, 89~91면). 어쨌든 이에 따라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와현은 실제로 다른 마을과 달리 2회에 1번씩 역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교항의 왜선지공역은 별도의 그룹이 만들어져 담당했던 듯 하다.

合洞·分洞을 통해 촌락을 일정한 수취 단위로 묶는 것은 洞里的의 행정적 재편이 부세 운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이상과 같이 마을간 횡적인 편제와 구별되게 마을과 관 사이의 종적인 형태의 유대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주로 이서조직과 마을 간에 맺어지는 契房이다. 계방은 지방차원에서 특정 관수품을 부담하고 다른 역을 면제받은 除役의 관행이 촌락 단위 공동납과 맞물려 확산된 것으로 토지와 호구를 별도로 확보하여 재정원으로 삼았던 養戶나 이서들의 방납행위 등 여러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제역촌의 대표적인 형태였다.³⁵⁾ 마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계방은 부세·잡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계방을 비롯한 이서와의 결사는 19세기 구조라의 洞錢 지출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

刑所契債 10냥, 獻工廳契債 7냥, 裨將廳契債 2냥, 星廳契債 2냥, 杖房契債 1냥,
邑星廳 춘추부담, 府司 춘추부담, 里任交遞時杖房·軍房·吹房例給 각 0.3냥씩³⁶⁾

刑所·獻工廳·裨將廳·星廳·邑星廳·府司 등 기구와 조직에 契債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임교체시 杖房·軍房·吹房에 대한 예금전도 계방과 다를 것이 없다. 구조라의 계방은 1822년에도 三廳과 ‘兄弟之誼’로³⁷⁾, 1850년 憲功廳과 ‘分義尊接’하자는 명분으로 결성한 것이 확인된다.³⁸⁾ 1844년에는 왜구리와 合洞한 상태에서 형방에 매년 7냥의 계방전을 납부하고 정비죄인에

연도	1873		1875	1876			1878	1879
날짜	1.15	9.15	6.8	1.29	8.6	9.18	1.29	10.7
지공여부	○	×	○	×	○	×	○	×

35) 송양섭,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계방의 출현-제역 및 제역촌과 관련하여』, 『역사와 담론』 59, 호서사학회, 2011.

36) 『동전표식기』(『고문서집성』 35, 96~111면).

37)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52면).

38) 『立誼』(『고문서집성』 35, 608~610면). 이후 계방관련 문서에서는 ‘大廳中’, ‘廳中’의 표현과 ‘獻功廳’, ‘刑房(刑所)’ 등의 기구가 나타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초 修契 이후 구조라는 ‘大廳中’과의 계방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아 사실상 유야무야된 듯 1881년 鄭道恒·俞漢城을 비롯한 16명 洞民의 연명으로 올린 등장에서 종래 자신들의 태도를 뉘우치고 ‘革舊遷新’의 취지로 새롭게 ‘大廳中’과 修契할 것을 간청하여 받아들여진다(『단자』(『고문서집성』 35, 547면)).

대한 供饋 부담을 면제받았는데³⁹⁾ 다시 1865년 刑所에 15냥의 계방전을 납부하고 기존의 供饋 뿐 아니라 刑具納付 부담도 면제받고 있다.⁴⁰⁾ 계방은 이같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었다. 1850년 재정부족에 시달리던 형소가 ‘周急之誼’를 명분으로 수 십 금을 받아 ‘잇을 수 없는 은혜’라고 사의를 표하고 있으며⁴¹⁾ 1899년 8월 獻供(功)廳도 ‘先生書案’을 埋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라에 계방전 2년치 15냥을 선지급해 주도록 요청하여 10냥을 받아내고 있다.⁴²⁾ 1905년에도 계방의 일종으로 생각되는 ‘作廳公契’에서 구조라에 배정한 70냥 가운데 40냥을 1907년 2월 還受하고 남은 30냥을 40% 비율로 取殖하여 1월과 7월에 거두도록 하고 있다.⁴³⁾

명칭상 계방이라해도 반드시 이서조직과 맺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구조라는 흥합 등의 禁養處 犯探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빈번했는데 1862년 구조라는 분쟁을 겪은 남해 적량 장포동과 계방을 맺고 있다. 구조라 洞中은 장포동이 금양처에 대한 조업을 허용하는 대신 이들로부터 매년 稷債 5냥을 받기로 합의했던 것이다.⁴⁴⁾ 이같은 형태의 계방은 1880년 삼천리와도 체결되었다. 삼천리는 구조라민들이 흥합 채취를 허용하자 이를 ‘萬丈之恩’이라고 하면서 ‘相酬之道’로 연간 10緡을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있다.⁴⁵⁾ 계방은 이같이 관의 기관과 조직뿐 아니라 특정 용익권을 둘러싸고 마을 간에 횡적인 방식으로도 체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다. 구조라가 소속된 거제의 면리편제는 19세기로 접어들어 面數가 증가하는 가운데 里數는 감소한 후 다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20세기 초 면과 洞里의 수는 공히 소폭의 감소를 보이지만 19세기 말의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 반면 지역의 호총과 구총은 19세기 말 반 이하로 대폭 감소해 면리편제의 변화가 인구요인 때문이 아님을 보여준다. 洞里의 행정재편에는 촌락사회에 가해지

39) 『完文』(『고문서집성』 35, 570면).

40) 『完文』(『고문서집성』 35, 575면).

41) 『完文』(『고문서집성』 35, 573면).

42) 『단자』(『고문서집성』 35, 548면); 『己亥八月日 貴洞僉下標』(『고문서집성』 35, 635면).

43) 『작청공계전항리포급완정책』(『고문서집성』 35, 294~295면).

44) 『壬戌十月日稷房完文』(『고문서집성』 35, 614~615면).

45) 『稷房文』(『고문서집성』 35, 616~617면). 마을 간 계방은 이뿐 아니었다. 1849년 구조라가 다대리와 맺은 ‘和會稷房’은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시빃거리나 通婚하면서 ‘分議(分義)’의 취지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른 契員은 會議를 통해 損斥할 것을 합의하고 있다.

는 각종 부세부담과 관련되어 이들 마을이 수취단위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面里의 공식적 행정편제와 별도로 실무를 담당한 이서조직은 개별 동리와의 이해에 따라 부세·잡역을 매개로 계방과 같은 사적인 결사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촌락간의 횡적인 관계나 관과의 종적인 결사 공히 부세·재정 문제가 크게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된다.

3. 진상·잡역의 운영과 촌락사회의 동향

1) 홍합·표고 진상의 부담과 갈등

구조라는 망치·왜구·양화와 함께 홍합·미역·표고 등의 진상물종을 상납해야 했다.⁴⁶⁾ 4개 마을은 진상납부를 매개로 하나의 수취단위로 묶여 있었던 것이다. ‘禮獻’의 방식으로 국왕과 궁중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거두는 진상은 공납제의 주요 부문 중 하나로 공물과 함께 군현 단위로 배정되어 관에서 마련하거나(官備)과 민호가 갖추어냈다(民備). 진상은 물종 자체 뿐 아니라 운반·수송에 소요되는 노동력도 요역의 형태로 제공해야 했다.⁴⁷⁾ 이들 물종은 15~16세기에는 주로 공물아문에서 지방에 분정해 거두었으나, 대동법 시행 이후 호조와 선혜청이 공인에게 값을 주어 조달하는 물종이 늘어났다. 거제부 지역은 여전히 현물수취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비슷한 시기 공상물자의 진배내역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택지정례』나 『만기요람』에서 홍합을 공물로 설정한 아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의문이다. 구조라를 비롯한 망치·왜구·양화 등 4동에 부과된 홍합·표고·미역 등의 물종은 ① 거제부를 통해 감·병·수영으로 수합되어 사용원에 납부한 후 궐내에 進排하는 방식, ② 도내 행정·군사상의 또 하나의 거점인 상주·성주·진주·안동·청도 등 도회관을 통해 상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었다. 정기진상 외에 별진상도 있었다.⁴⁸⁾

46) 「完文」(『고문서집성』 35, 완문1, 570면).

47)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48) 최주희, 「15~16세기 別進上의 상납과 운영-강원·경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6, 고려사학회, 2012, 21~22면; 『嶺南廳事例』 都會官.

〈표 6〉 1790년 구조라의 紅蛤·葉古·藿 부담

秩	물종	구분	명목	액수(두)	
진상	홍합	진상	正月等	0.363	2.61(2.88냥)
			3月等	0.397	
			2月等	0.21	
			5月等	0.37	
			9月等	0.26	
			10冬月	0.62	
			6月尙州都會所封進上	0.39	
		별진상	閏4月	0.3	0.5(4냥)
			10月	0.2	
		구청	4月等	1.025	9.55(57.3냥)
			使臣求請	1.4	
			別求請	1.015	
			謝恩求請	1.02	
			瀋陽所封求請	1.01	
			進賀求請	1.02	
	燕后崩遊陳慰兼別求請		1.02		
	進香使求請		1.02		
	9月冬至使求請		1.02		
표고	진상	안동납(春等·秋等)		1.936	
		순영납(春等·秋等)			
	별진상	4月	1.035		
	6月	0.901			
공상	홍합		春等·秋等	잘못된 계산식	
	표고		春等·秋等		
기타	표고		官主帖下		
	홍합		朔膳		
	官廳藿16丹, 牛毛加士里, 冬柏, 民所長藿2.0두				

* 전거: 『동전표식기』12(『고문서집성』 35, 96~111면).

** 액수 단위는 斗-刀-습-夕이며 두당 대전가의 경우, 홍합은 공상과 별진상은 8냥, 구청은 6냥임.
표고의 경우 안동납진상은 10냥, 순영납진상·별진상은 8냥임. 공상질과 기타는 대전가 불명임.

구조라는 ‘洞錢’을 통해 홍합·표고·미역(藁) 등을 충당하였는데 1790년 그 내역을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우선, 구조라가 부담한 홍합진상 내역을 보면 진상질의 항목은 진상과 별진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진상의 경우 정월에서 6월 상주도회소봉진까지 총 2.61두=2.88냥을 부담하였다. 별진상은 0.5두=4냥이었고 求請은 4月等求請~9月冬至使求請 등의 명목으로 총 9.55두=57.3냥이 부과되었다. 그 외에 공상질이 있지만 액수불명이다. 1790년 확인되는 구조라의 홍합부담은 12.66두로 대전가는 82.18냥에 달했다. 60년 후인 1850년 확인되는 홍합부담은 正月別求請·四月冬至求請·四月審陽所封求請·三月陳慰兼別求請·三月陳慰兼別求請 각 1.92두=6.12냥과 정월등진상 0.363두=2.9냥 및 四月進上 0.39두=3.12냥 등을 합하여 총 2.673두=30.4냥으로 나타난다.⁴⁹⁾ 일부 정보누락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담은 179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은 알 수 있다. 다만, 1868년에는 3.652두로 부담액이 다시 올라가는데⁵⁰⁾ 이는 앞서 거제부 전체의 진상 내역에 보이지 않는 求請의 명목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로 외교비용으로 발생하는 구청의 항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전체 진상 부담액의 유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듯하다.

한편, 표고진상의 경우, 진상질로 안동과 순영에 춘추 두 차례, 별진상도 4월(1.035두), 6월(0.901두)로 나누어 납부했다. 공상질도 있었다. 표고진상은 부담액의 일부만 기재되어 있어 전체규모를 알기는 힘들다. 표고의 경우 1850년 기준으로 안동납 정월표고는 호당 0.15두, 순영납 3월춘등의 경우 호당 0.141두가 부과되고 있다.⁵¹⁾ 진상은 戶數를 기준으로 부과되었는데 대상은 마을의 일부 호였다. 가령 1849년 緡陵移葬으로 분정된 호조진상표고 2.296두는 호당 0.164가 부과되었는데⁵²⁾ 이를 역산하면 부담호는 14호로 60~70호를 오르내리는 구조라 전체 호총에 크게 못 미쳤던 것이다. 진상부과시 호총의 일부를 뽑아 대상으로 삼은 듯 하지만 進上戶를 선정하는 기준은 알 수 없다. 아마도 촌락내부에서 합의된 방식이 작동했을 터이다. 그 외에 미역과 우무가사리, 동백 등의 부담도 있었다.

49) 『동전표식기』(『고문서집성』 35, 96~111면).

50) 『부세분정기』(『고문서집성』 35, 639 ~640면).

51) 『동전표식기』(『고문서집성』 35, 96~111면).

52) 『동전표식기』(『고문서집성』 35, 96~111면).

〈표 7〉 國葬・移陵과 구조라의 표고・홍합부담

시기		명목	액수(두)	호당부담
1800년 正祖國葬		初等藁枯	1.175	
		2等藁枯	1.435	
		3等標枯	2.45	
		4等藁枯	1.45	
		魂殿納藁枯	1.546	
		8月藁枯	2.01	
		初等紅蛤	0.4	
		2等紅蛤	1.4	
		3等紅蛤	0.5	
1821년 孝懿王后國葬	4월6일	祭需初等藁枯	0.918	
	4월7일	國恤戶曹求請祭需藁枯	0.476	
1834년 純祖國葬	12월 13일	初等藁枯	1.178	
		2等藁枯	1.7	
		訃告使求請紅蛤	1.141	
		使臣求請紅蛤	1.15	
1849년 綏陵移葬	4월	戶曹進上藁枯	2.296 (22.96냥)	0.164두
1849년 憲宗國葬	7월	朔膳藁枯		0.082두
		奉常寺藁枯		0.17두
	8월	朔膳	1.372	
1857년 純元王后國葬		藁枯		0.173두

* 자료: 『동전표식기』(『고문서집성』 35, 96~111면).

진상부담은 이뿐 아니었다. 國葬이나 移陵時 필요한 홍합과 표고도 부정기적으로 부과되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正祖・孝懿王后・純祖・純祖妃・憲宗・純元王后 등의 국장과 綏陵移葬에 소요되는 표고와 홍합을 상납해야했던 것이다.⁵³⁾

53) 文祖(孝明世子)와 그의 비 神貞王后의 陵인 綏陵은 1849년 의릉 인근에서 양주 용마봉 근처로 옮기게 된다(『헌종실록』 권13, 12년 4월 18일 계묘; 『헌종실록』 권1, 誌文).

이는 정규 진상과 별도의 불규칙적인 형태로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늦은 시기까지 현물납을 고수하고자 했던 進上도 해당 물종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듯하다. 1844년 구조라의 형편은 다음과 같았다.

근래 山海村이 해마다 점차 곤핍해져 產物이 거의 없기 때문에 春進의 기한을 맞추는 방법은 戶別로 斂錢하여 …… 質取하는 사이에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비록 下戶와 殘氓이라도 연간 감당해야할 돈이 많게는 10貫에 이르고 적어도 8~9냥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민이 지탱하지 못해 가족을 이끌고 도망가는 사람이 목과 등이 서로 이어질 정도입니다.⁵⁴⁾

물산의 부족으로 표고와 홍합의 春進上 기한을 맞추기 힘들자 戶別로 돈을 거두어 표고·홍합 등 진상물종을 구입하여 충당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호별 부담은 매우 과중해서 ‘下戶殘氓’이라도 연 8~10냥이나 되었고 이를 건디지 못한 민들의 유리·유망이 이어졌다.

우선 홍합과 미역은 구조라 앞바다에 위치한 內島와 外島 해역의 禁養處에서 이루어졌다. 홍합을 채취하는 작업은 위험한 일이기도 해서 1831년 周拂里 해변에서 홍합을 따던 배개운이라는 사람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⁵⁵⁾ 진상납부는 마을민들에게 매우 과중한 부담이었다. 가령 1831년 마을민 김윤이는 진상납부가 어렵자 자신의 깃들답 大洞光字員 3夜味1斗5刀只地=結卜3부9속을 26냥에 洞中에 방매하였다.⁵⁶⁾ 1857년에는 서울에서 파견된 관원들을 지공하기 위한 負持軍을 구조라에서 징발하자 마을민은 등장을 올려 부지군은 진상을 담당하지 않는 마을이 책응하는 것이 邑例이므로 이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⁷⁾

54) 『완문』(『고문서집성』 35, 570면).

55)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04면). 연해 지역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된 해난사고도 잇달았다. 대표적인 것이 1881년 8월 4일 태풍으로 인한 참사이다. 이 때 李太必 선박 2척과 여기에 타고 있던 船人 15명이 익사했고 盧正良 선박 1척, 盧松良 선박 1척, 猪島의 金允五 선박 1척, 姜必權 선박 1척, 文士益 俠船 1척, 玉明浦의 朴大出 선박 1척, 林出伊의 俠船 1척, 玉明浦의 金俊業선박 1척, 盧方聿 선박 1척 등 총 9척의 배가 파손되었다(『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486면)). 거제부는 익사한 船人 15명의 시신인양 작업을 벌이는 한편 公錢 중 15냥을 屍親에게 지원하고 군역도 탈급 조치하였다(『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487면)).

56) 『명문』(『고문서집성』 35, 628면).

과중한 진상부담에 대한 민원은 아마 일상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1868년 거제부가 홍합상납액에 대한 감액조정을 작업을 하게 된 데에는 이상의 요인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1850년 各等進上을 하나하나 조사하여 元封 액수 외에 뒤섞여서 잡다하게 늘어난 것을 삭감하여 바로잡고 줄인 액수는 每年每等別로 규정하였다. 이 때 감액폭은 대략 20% 남짓으로 이를 절목으로 만들어 各里에 나누어주고 恒式으로 삼도록 하였다.⁵⁸⁾

<표 8> 1868년 구조라·망치·왜구·양화 4동의 紅蛤·長藿 감액 후 부담 내역

물종	구분	명목	舊助羅	望峙	倭仇	楊花	합
紅蛤	進上	進上	0.259	0.321	0.16	0.199	0.939
		尙州進上	0.304	0.225	0	0.218	0.747
		加磨鍊進上/進上	0.055	0.201	0	0.138	0.394
		冬至使求請	0.793	0.393	0	0.243	1.429
		冬至使進上	0	0.393	0.008	0	0.401
		十冬兩朔進上	0.482	0.392	0	0.138	1.012
		閏朔進上	0.259	0.222	0	0.199	0.68
		소계	2.152	2.147	0.168	1.135	5.602
	供上	供上兩等	0	3.0	1.6	3.5	8.1
		春等供上	0.7				0.7
		秋等供上	0.8				0.8
		소계	1.5	3	1.6	3.5	9.6
	합계		3.652	5.147	1.768	4.635	15.202
長藿		長藿代	1兩	1兩		1兩	
		官廳藿	16丹	22丹	7丹	18丹	
		藿稅錢	8.87兩	8.87兩	8.87兩	8.87兩	

* 자료: 『부세분정기』(『고문서집성』 35, 639~640면)

** 단위는 斗·刀·合·勺임.

57)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65면).

58) 『一運項里各等進上掾弊節目』(『고문서집성』 35, 82~83면).

1868년 감액조치 후 구조라를 비롯한 망치·왜구·양화 4동의 紅蛤·長藿 부담내역을 보면 홍합의 총액은 進上紅蛤 5斗4刀2合1勺, 供上紅蛤 9斗5刀3勺으로 총 14斗9刀2合4勺에 미역(藿) 부과액은 59丹이다(실제 합계와는 불일치). 4동의 홍합부담은 망치가 5.147두로 가장 많고 다음이 양화 4.635두, 구조라 3.652두, 그리고 왜구의 부담이 1.768두로 가장 가볍다. 長藿의 경우도 4동의 객세전은 8.87냥으로 균등하지만 장곽대는 구조라·망치·양화 3동만 1냥을 거두고 왜구는 아예 배정하지 않고 있다. 장곽대는 거제부 민고의 하나인 보민소에 납부하는 것이었다.⁵⁹⁾ 왜구는 이나마도 감당하기 벅찼던 듯 구조라와 合洞과 分洞을 거듭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현물로 거두었던 관청곽 63단은 홍합의 동리별 부담액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표 9〉 1849년 태안 10개 마을의 전복별진상 식리전 분급실태

마을	분급전	逢去人	마을	분급전	逢去人
門洞里	18.8냥	최만주	都莊洞	11.6냥	김성도
定山里	16.4냥	설신흥	丁門里	14.8냥	조춘성
古場洞	11.2냥	나방철	新基里	5.6냥	최영복
漆浦里	3.6냥	박철손	元林里	9.6냥	오준일
安坡里	8.4냥	김계봉	新津里	14.8냥	김논득

* 자료: 『各里進上軍民節目』

이와 비슷한 사례는 비슷한 시기 충청도 태안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태안의 전복진상으로 인한 연해 마을의 부담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 또한 거제와 마찬가지로 10개 마을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진상전복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1844년 진상을 담당한 태안의 10개 洞民은 등장을 올려 진상으로 인한 부담이 과중하여 민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남아있는 호가 10여 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태안현감은 廩錢 50냥을 출연하여 ‘補弊進鰥’의 資用으로 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 자금은 存本取殖하여 문제가 심각했던 別貢에 활용되었다. 또 草蓆·鹽盆 등에 대한 口文錢은 매년 4월과 10월 望日에 收捧하여 元劃錢에 添入, 본전을 만들고 ‘착실한 사람’에게 播給하여 이자를 받도록 하였다. 〈표 9〉에 나타난 1849년 상황을 보면 10개 마을에 총 88.4냥이 분급되고 있음을

59) 거제의 민고에 대해서는 김현구, 앞의 1995 논문 참조.

알 수 있는데 처음 출연한 액수가 50냥이었음을 감안하면 기금의 규모는 상당히 늘어난 듯 하다. 분급은 3.6~18.8냥까지 다양한데 마을의 호수가 기준이 되었을 확률이 크다. 봉거인은 각리별로 분급전을 수령·관리한 사람으로 보인다.⁶⁰⁾ 이 같이 태안지역의 전복진상도 구조라의 그것과 유사하게 여러 촌락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진상물종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구조라로 돌아가자. 진상으로 인한 문제는 부담액 자체로 인한 것 뿐만은 아니었다. 內·外助羅島의 紅蛤禁養處는 외부선박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의 어민들에게는 이곳이 다량의 해산물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해역으로 偷採·潛採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곳이기도 했다. 1851년에 固城 蛇梁島의 어선이 이곳에 犯入하여 홍합을 몰래 채취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때 구조라 이임은 이를 거제부에 알려 외부선박의 내외도 출입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거제부에서도 偷採者의 嚴治를 약속하고 있다.⁶¹⁾

하지만 금령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는지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1853년에 또다시 固城 蛇梁島民이 몰래 홍합을 채취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구조라민들이 이들을 잡아다 추궁하자 사량도민들도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구조라의 20等 進上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구조라민들은 거제부에 요청하여 누구든 다시 潛採를 하면 진상의 부담을 移定할 것을 확인받고 있다.⁶²⁾ 하지만 1857년에도 다시 蛇梁津民 일부가 項里浦에서 홍합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에도 이들은 船主 朴乃一, 沙工 林長春, 格軍 秋就成 외 6명의 명의로 이후 동일한 일이 있을 경우 진상 20여 등은 자신들이 담당하겠다는 手標를 쓰고 풀려난다.⁶³⁾

이러한 정황은 藿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865년 舊助羅·倭仇·望峙·楊花·臥逸串(臥峴) 등 5개 동은 藿稅錢 35냥과 官廳藿 61단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여기에서도 藿田禁養處를 공동으로 관리한 5개동은 偷採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저지른 마을에

60) 『各里進上軍民節目』(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

61)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26면);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28면).

62) 『巨濟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64면).

63) 『甲寅十二月初七日捧標記』(『고문서집성』 35, 634면).

게 부담 전체를 전가할 것을 完議하고 있다.⁶⁴⁾ 홍합이나 미역에 대한 偷採는 이웃 마을에 의해서도 자행되었다. 1832년 구조라민들이 올린 등장의 내용을 보자.

本里(구조라) 例納 가운데 紅蛤進供은 매년 責應하는 것이 13等條인 바, 이웃 마을 와현 역시 같은 포구의 매우 가까운 경내에 있는데 封進重境을 꺼리지 않고 어렵지 않게 홍합을 캐기를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합니다. (홍합을) 납부할 때는 (와현이) 進供에서 빠지기 때문에 나누어 내자는 취지로 누차 曉諭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으니 세상에 奉公의 백성이 있습니까?⁶⁵⁾

구조라민들은 진상을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금양처의 홍합을 마구 채취하는 이웃 와현리민들에게 진상을 분담해줄 것을 여러차례 설득하였으나 듣지 않자 거제부에 등장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검토한 거제부는 구조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13條 가운데 1·4·7월의 3등 진상을 와현에 移錄하여 거둘 것을 지시하였다.⁶⁶⁾ 앞서 고성 사랑진민의 偷採에 대한 처리와 동일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는 끝내 관철되지 못한 듯 하다. 1865년 內·外島의 舊田과 紅蛤禁養處에 대한 偷採로 舊助羅·望峙·楊花·倭仇 4동민이 항의하여 와현민 3명이 처벌되고⁶⁷⁾ 1868년에도 ‘四洞居民’이 와현민의 犯採를 고발하는 등⁶⁸⁾ 누차에 걸친 논란에도 불구하고 와현리민은 여전히 偷採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표고진상과 관련해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진상표고는 북병산(465m)·노자산(565m)·가라산(585m)·망산(375m) 자락에 위치한 舊助羅·望峙·楊花·三巨·吾松丁·加乙串·多大·網浦·九千·火蟻·猪仇味 등 이른바 ‘山底11洞’으로 불리우는 촌락군에 부과되었다. 표고진상을 둘러싸고 ‘산저 11동’은 이해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고 山底都公司員이라는 직임을 둔 것도 이 때문으로 생각된다.⁶⁹⁾ 사달은 구조라로 인해 났다. 1789년 7월 표고채취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구조라민들이 이를 면제해달라고 거제부에 정소하여 구조라를 제외한 산저 10동 이임들의 회의가

64) 『완의』(『고문서집성』 35, 606면).

65)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59면).

66)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59면).

67) 『項里望峙倭仇楊花四洞頭民書目』(『고문서집성』 35, 541면).

68) 『項里望峙楊花倭仇四洞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67면).

69) 1790년 3월 標文 작성에 참여한 11개동에는 이임 11명과 함께 산저도공사원 차승금이 나타난다.

소집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논의 끝에 구조라의 표고납부를 면제해주는 대신 加錢(添補錢)을 부담하도록 합의한다. 같은 해 11월 구조라가 本錢 40냥과 添補錢 60냥을 부담하는 대신 구조라에 부과되었던 표고를 나머지 10동이 분담하는 내용의 완문이 발급된다.⁷⁰⁾

하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1790년 1월 10동 가운데 ‘公議’에 불참했던 猪仇·多大·芻串·網浦 4洞民들이 감면해준 구조라의 표고부담을 나머지 10동이 분담하는 것이 ‘한 마을에만 이익이 되고 여러 마을에 해를 끼치는 (利一害衆)’ 매우 편파적인 처사이므로 이를 반복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들은 구조라의 표고를 감면해 줄 경우에도 減代分은 7洞만 분담해야하고 자신들은 빠지겠다고 반발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4洞은 모두 읍내면 소속이었다.

중재에 나선 거제부사는 이들 4동을 제외한 吾松·火蟻·化峙·九千·望峙·楊花·三巨里 등 7洞民을 초치하여 다시 查問하게 된다. 7동민들은 4동민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구조라가 표고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10동이 책임지고 납부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애초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지켜야한다고 하였다. 거제부사는 애초 산저 11동민이 ‘一心發義’하여 결정한 사항을 完文으로 막 시행하려던 차에 합의를 흔드는 행태는 ‘극히 回謫한 습속’이라고 하면서 저구·다대·갈곶·망포 등 4동을 마땅히 患難相救의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비판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거제부사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개 이 11동의 당초 公議는 원래 物種이 나지 않는 연유에 또 이웃 리가 相孚하는 友誼이기도 하였으나 오직 4동에게서만 이렇게 전후로 二說이 되어 어지럽게 호소하였다. 지금 듣건대 7洞의 民論이 이미 이같이 시종여일하니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그 소위 減代한 표고액에 4리는 논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로 矯救의 道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라는 바에 따라 시행할 것을 허락한다.⁷¹⁾

70) 『乾隆五十四年(己酉七月日完文』(『고문서집성』 35, 605면); 『完文』(『고문서집성』 35, 571면). 아마도 표고의 현물납이 어려운 상태에서 구조라는 이미 ‘本錢’ 40냥을 낸 상태에서 이 때 ‘添補錢’ 명목으로 60냥을 추가 부담하고 완전히 頗役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조라와 인근 마을의 해세와 진상 납부를 둘러싼 갈등의 전말을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전민영, 앞의 논문, 2016을 들 수 있다.

71) 『完文』(『고문서집성』 35, 572면). 이 때 거제부사는 이익현으로 확인된다(『승정원일기』 1659책,

결국 거제부사는 7동민의 의견에 따르되 4동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라의 표고 부담을 감면한 대신 감면액은 7동에게만 분담시키는 것으로 절충하고 있다. 사실상 4동민이 제시한 차선책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산저 11동 가운데 구조라는 일정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표고부담에서 제외되었고 감액분은 분담을 원치않는 4동을 제외한 7동에 분정되었다. 구조라의 藁古不産 문제에서 비롯된 진상부담 문제의 봉합 과정은 대체로 이상과 같았다.⁷²⁾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구조라는 인근의 촌락과 함께 홍합·미역과 표고 등의 진상물자를 부담했다. 진상은 홍합·미역 등은 연해의 4개 마을이, 표고는 ‘산저11동’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부담하였는데 구조라는 양쪽 모두에 속했다. 갖가지 명목으로 부과되는 진상은 정규부담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항목이 오히려 액수가 컸다. 특히 國葬이나 移陵 등으로 내려오는 진상은 예측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액수도 만만치 않았다. 진상의 과중함은 민원을 불러왔고 정부도 점진적으로 감액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홍합·미역에 대한 偷採·潛採도 문제였다. 禁養處에 들어와 조업하다 적발된 외부의 선박들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풀려났지만 유사한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표고진상을 둘러싸고도 복잡한 갈등이 드러난다. 표고가 나지 않는 구조라가 ‘산저의 10개 마을’에 자금을 지원하고 진상부담에서 빠지려 하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읍내 4개 동은 구조라의 감면분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분쟁은 결국 거제부사의 중재로 다수에 해당하는 7동민의 의견대로 애초의 결정사항을 지키되 이익을 제기한 4동민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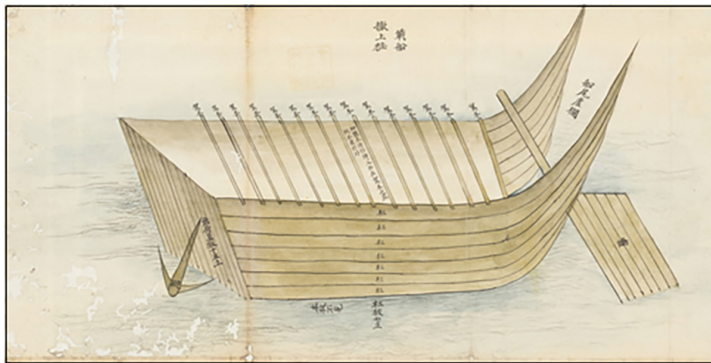
정조 13년 6월 21일).

- 72) 이후 산저 11동의 표고진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 1850년 3월에는 舊助羅 姜周翁, 望峙 金午宗, 楊花 李順川 등이 ‘外山底居民’ 명의로 암행어사에게 등장을 올려 표고진상 10여 등의 ‘白地徵奉’만으로도 과중한데 이보다 많은 해물홍합의 進上·求請 공상과 各所의 年例納이 부과되고 있다고 하면서 ‘山底藁古進上’과 ‘海物紅蛤進上’ 둘 중 하나를 頒給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巨濟外山底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61면)]으로 보아 이 때에도 진상표고가 부과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山底洞은 우병영에 매년 진상을 措備하는데 소요되는 弓槩木 24개를 납부해야했는데 산림이 황폐해지자 대전납 형태가 되었다가 1883년에 끝내 탈급 조치된다.(『項里完文』(『고문서집성』 35, 589~590면)). 이 뿐 아니었다. 山底各洞은 官邑日用刑具·每年漕斛橫板·戰兵船粧覆木物·新延時衙修理木物 등 이른바 ‘山底木物’을 전담하였다. 하지만 산림이 황폐해져 목재조달이 어려워지자 우여곡절 끝에 ‘輿論之公共’에 따라 1884년 이를 혁파하고 소요 목물은 읍에서 구입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결정된다(『項里甲申二月日完文』(『고문서집성』 35, 591~592면)).

방향으로 처리된다. 이같이 부세운영 등 마을간 이해가 충돌하는 민감한 문제는 촌락 사회 내부의 의견조율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고 이들간 갈등이 야기되었을 경우 관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의견을 수렴, 절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2) 선재운반역의 운영과 造幕役을 둘러싼 분쟁

구조라는 인근 마을과 함께 통영과 수군진에서 부과하는 각종 잡역에도 노출되었다. 선조 16년(1593) 삼도수군통제사가 만들어진 이래 통영은 경상·충청·전라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사령부로 기능하였다. 통영은 그 위상만큼이나 많은 재정과 병력을 필요로 했는데 18세기 중엽 이후 그 수급이 원활치 않아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었다. 특히 연해 도서 지역의 요충지에 위치한 거제도에는 7개의 수군진에 설치되어 연해 방어의 거점이 되었는데 통영과 예하 수군진으로부터 부과되는 각종 잡역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다.⁷³⁾



〈그림 2〉『各船圖本』(奎軸12163)에 나타난 가룽목

73) 통영의 군제와 재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할 것. 김현구, 『조선후기 통제영의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통영곡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3; 송기중, 「균역법 실시 이후 통영곡 운영의 변화」, 『한국문화』 6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송기중, 「17~18세기 통제영의 방어체제와 병력운영」,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통영과 인근의 수군진으로부터 가해지는 부담 가운데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통영의 선박제조용 駕龍木物を 운반하는 曳運役이다.⁷⁴⁾ 예운역은 구조라를 비롯하여 왜구·망치·양화 등 4洞이 ‘돌아가면서 맡는 것(輪回)’이 ‘定例’였다.⁷⁵⁾ 가룽목을 운반할 상황이 발생하면 통영이 거제부에 통보하여 거제부사의 전령에 따라 4洞船案의 차례대로 해당 마을의 ‘完固船’이 징발되었다. 목물운반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되었다(遲滯抵罪).⁷⁶⁾ 구조라의 경우 1851년 1월 김우철의 선박⁷⁷⁾, 1856년 임금돌의 선박이 定執되고 있음이 확인된다.⁷⁸⁾ <표 10>은 1821~1890년 기간 구조라·왜구·양화·망치 4동의 가룽목물운반의 담당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⁷⁹⁾ 자료는 1821~1833년 구간과 1884년 이후의 정보가 산발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나머지 기간은 1852·1855·1860·1876년이 빠져있는 것 외에 연도별로 상당히 양호한 시계열을 갖추고 있어 4개동의 역 부담패턴을 살피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4동의 역 부담의 순서를 조정하고 관과 연락을 취하는 마을은 구조라였던 듯 하다. 구조라 이임은 전령·서목·첩정 등의 방식으로 구조라를 비롯한 4개마을의 목물운반역의 담당순서를 보고하고 예외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4동을 대표하여 사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74) 선박의 改造와 改築期間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각종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여기에는 대동유치미를 중심으로 각종 재원이 추가적으로 동원되었다. 특히 船材의 조달과정에서 松田으로부터 이를 운반하는 曳運役의 운영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19세기 후반 통제영의 경우, 船材山曳雇價의 명목으로 座船 720석, 副船 500석, 左·右別船, 龜船, 左·右探船 각 300석이 배정되어 있었다(김현구, 「조선후기 조선업과 조선술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81, 국사편찬위원회, 1998, 251~257면). 가룽목은 선박에 가해지는 횡압력과 상부의 하중을 견디기 위한 기능을 가졌다. 가룽목은 배의 하단부에 가로로 설치되었고 양 끝은 선박 하단부의 결면을 결정하는 목재인 만큼 배를 진조하는 통영이나 수군진 입장에서 이 목물의 조달에 각별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75)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06면).

76) 『전령』(『고문서집성』 35, 475면).

77)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23면).

78)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32면).

79) 전거는 다음과 같다. 『전령』 1~19(『고문서집성』 35, 473~481면); 『서목』 17(『고문서집성』 35, 502면); 『서목』 30(『고문서집성』 35, 515면); 『서목』 29(『고문서집성』 35, 514면); 『서목』 30(『고문서집성』 35, 515면); 『서목』 31(『고문서집성』 35, 516면); 『서목』 32(『고문서집성』 35, 517면); 『서목』 34(『고문서집성』 35, 519면); 『서목』 38(『고문서집성』 35, 523면); 『서목』 49(『고문서집성』 35, 534면); 『서목』 52(『고문서집성』 35, 337면).

〈표 10〉 1821~1890년 구조라·왜구·양화·망치 4동의 가룽목물운반 담당 추이

연도	월일	구조라	왜구	양화	망치	연도	월일	구조라	왜구	양화	망치
1821	3월28일	○				1863	9월18일			○	
1830	6월25일			○			12월		○		
1833	10월17일			○	○	1864	3월				○
	8월9일	○					7월13일	○			
1845	1월23일	○					1월13일				○
1846	3월6일	○								○	
	3월 4일				○	1865	7월		○		
1847	8월22일	○					9월8일				○
	1월10일	○					10월				○
	1월12일	○					5월	○			
	1월13일	○				1866	10월			○	
1848	4월15일	○					9월		○		
	4월18일		○				4월				○
	1월13일	○				1867	6월	○			
	7월24일	○					9월		○		
1849	7월27일			○		1868	7월			○	
1850	8월29일	○				1869	3월				○
	1월25일	○					1월		○	○	
1851	1월30일	○					7월15일				○
	3월		○			1870	윤10월12일	○			
	5월	○					12월17일		○		
	9월			○			2월			○	
1853	11월				○	1871	2월14일				○
	12월3일		○				5월27일	○			
	12월5일	○					10월			○	
	3월 8일			○		1872	3월	○			
1854	윤7월9일					1873	7월10일			○	
1856	5월 8일	○				1874	7월		○		

1857	2월			○	1875	1월				○
	6월23일			○		1월29일	○			
	2월			○		12월23일	○	○	○	○
	6월23일			○		1877 7월15일		○		
1858	4월		○		1878	8월				○
	9월	○				6월	○			
	10월			○	1879	2월	○			
	11월			○		6월				○
1859	2월		○		1880	4월		○		
	4월	○				6월				○
1861	2월		○			7월	○			
	11월3일			○		8월		○		
	11월12일			○		10월				○
1862	3월28일	○			1882	6월	○			
	7월15일			○		9월		○		
	9월		○		1884	7월				○
1863	5월25일			○		1890 6월			○	
	7월19일	○			총횟수		33	19	20	23

〈표 10〉을 통해 가롱목물 운반역의 부담추이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우선 1821~1851년의 경우 총 20회의 역이 부과되는데 마을별로는 구조라 14회, 양화 3회, 망치 2회, 왜구 1회의 순으로 구조라에 편중되고 있다. 이것이 구조라민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문서만을 남겨놓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역을 대부분 떠안 다시피 해서 그러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이 시기는 서목·첩정의 형태가 섞이고 정보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등 자료 차원의 결함이 적지않다. 만약 구조라가 역을 대부분 담당했다면 나머지 3개동은 다른 부담이나 마을의 형편이 감안되었을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왜구리이다. 왜구는 이 시기 단 한번 그것도 1848년 처음으로 역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해에 구조라와의 分洞한 정황⁸⁰⁾과 관련시켜 본다면 이 때가 되어서야 왜구가 독립된 역 부과 단위로 자리잡게 된 것인지

80)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18면).

도 모른다. 이 해 1월 13일 부과된 役도 원래 왜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구조라가 대신 맡고 있는 것⁸¹⁾과도 무관치 않을 듯 하나 이 또한 추측에 불과하다.

1853~1884년의 구간은 총 75회의 역을 구조라 19회, 왜구 18회, 양화 17회, 망치 21회 담당하고 있다. 이 시기는 4개 마을의 부담 횟수가 분산되면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역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몇 가지 예외도 있어서 1865년 9월 8일과 10월 망치가 연속 2회 역을 담당하고, 1870년 1월에는 2개 마을, 1875년 12월 23일과 같이 네 마을이 모두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 마을이 연속으로 역을 부담하는 것은 순번에 해당하는 마을의 형편이 좋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복수의 마을이 동원된 경우에는 통영과 인근 수군진으로부터 동시에 역이 내려왔기 때문일 것이다.

선재 운반과 관련하여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마을간 합의나 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했음이 확인된다. 1821년 3월 양화리 경내 선재를 산에서 내려 바다를 통해 운반했으나 다시한번 曳下하라는 관령이 내려왔다. 하지만 이를 어느 마을이 담당할 지 합의가 되지 않자 거제부는 원래 정해진 井間の 순서에 따라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다.⁸²⁾ 1833년에는 차례가 돌아온 양화가 역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자 망치리가 함께 이를 담당하고 있다.⁸³⁾ 1848년에는 차례가 돌아온 왜구리에 선박이 없어 구조라의 노성주 선박을 징발한 사례도 있다.⁸⁴⁾ 어찌 되었건 가롱목물운반역의 부과와 담당은 이 구간의 방식이 전형적인 형태일 것으로 이해해도 될 듯 하다.

1875·1876년 어간에는 역 부담 방식의 변화가 포착된다. 각洞은 2냥씩 납부하여 防納을 통해 역을 고립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는 특정하

81) 『첩정』(『고문서집성』 35, 545면).

82)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485면).

83) 『項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06면).

84) 『첩정』(『고문서집성』 35, 545면). 구조라의 선박들은 관의 점검 대상으로 선세 징수를 위해 3년을 단위로 관의 點考를 받아야 했다. 가령 1887년 구조라 船案에 등재된 배 가운데 盧甲俊·林哲元·丁甲老·盧尙良·姜時哲·張興卜·朴官成·姜京文·張百年·李希俊·張性仁·鄭官業·李性必 등 총 13인의 선박이 오래되어 파손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관에서는 당해년이 點考하기 위한 식년이므로 선세는 조사한 후 分捧하도록 조치하였다. 1904년 선상회사에 등록된 선박별 선주의 명단을 보면 中次船船主 朴學律, 小次船船主 盧尙彦·奴卜芴·姜洪俊·盧松崑, 桶船船主 盧仁浩·李性樂·李洪律·盧吉辰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추가로 포구에 金碩汝船 1隻, 鎮南閑山釜浦 金允兼船이 收稅次 정박하고 있는 것도 보고하고 있다(『船商會社大中小船案成冊』(『고문서집성』 35, 381~382면)).

기 힘들지만 최소한 이 때부터 역의 부담은 雇立의 형태로 계속되었을 확률이 크다. 1877년 이후에는 1890년까지는 양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 이같이 가롱목물운반역의 수행은 대체로 일정한 규칙성을 띠면서 나름의 차례에 따라 균형함을 유지하는 양상을 꾸준히 보이며 이와 관련된 심각한 분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 가롱목물 운반역의 부담양상을 정리해보자. 가롱목물 운반역은 구조라와 왜구·망치·양화의 4개 마을이 돌아가면서 수행하였다. 부담의 전체적인 양상은 구조라의 주도적 역할 하에 4동이 공평하게 나누어 담당하는 패턴이 포착된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4동은 협의를 거치거나 관에 문의하여 결정하였다. 4동의 부담과정에서도 분동이나 합동으로 담당회수의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 후반에는 역의 수행에 고립제가 적용되었다. 가롱목물 운반역이 무거웠던 만큼 4동의 공정하고 균평한 부담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부의 협의나 조정은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심각한 분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구조라리에 부과된 역 가운데 ‘마을의 巨弊’⁸⁵⁾로 심각한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이른바 ‘造幕役’이었다. 造幕役이란 訓練都監船·統營八戰船·巨濟府一二戰船을 새로 만들 때 동원되는 耳匠·沙格들이 거처할 幕舍를 만드는 사역으로 구조라·망치·양화 3洞이 함께 담당하였다.⁸⁶⁾ 조막역은 구조라를 비롯한 촌락사회에 부과되는 역 가운데 苦重하기로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런데 조막역을 둘러싸고 구조라와 양화·망치는 갈등과 타협을 거쳐 조직적인 정소활동을 전개해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기에 이른다. 조막역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촌락사회의 역동성은 물론 행정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각급기관간 지배체제와 행정절차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조막역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구조라민들이었다. 이들은 1828년 1월 거제부사와 인근 지세포·옥포·조라포의 만호에게 등장을 올려

85)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58면).

86) 새로운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재의 조달과 운반은 물론 鐵釘 등의 공급, 冶匠·爐打軍과 耳匠을 동원하기 위한 雇價 등 많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했다. 이 가운데 耳匠의 경우 座船 88명, 副船 50명, 左·右別船, 龜船 각 45명, 左·右探船 40명이 배정되었고 料米 또한 兩朔 기준 左船 106석 10두, 左·右別船, 龜船, 左·右探船 각 35석 8두로 상세히 규정되었다(김현구, 앞의 논문 251면의 『營下節目』 참조).

조막역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한다. 다음은 구조라민이 거제 부사에게 올린 등장이다.

선박을 새로 만들 때 조막을 설치하는 등의 일에서 望峙·楊花 두 洞과 저희 들 3洞이 合力하여 造幕하는 중에 지극히 원통한 일은 知世浦·玉浦·助羅 3鎮의 搜討에 비바람이 불어도 가리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거행하는 사이에 매번 死境에 처하는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情狀을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유를 舊官使道前에게 呈狀하여 造幕 한 가지를 頒給해주는 취지로 完文을 만들어 堅置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망치·양화 두 洞의 居民이 造幕의 일로 呈訴한 후 3洞이 전과 같이 거행할 뜻으로 分부하고 完문을 成給하여 위로 올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3鎮에 올린 所志를 貼連하여 한 목소리로 仰訴하오니 충분히 參商한 후 知世浦·玉浦·助羅 3鎮의 搜討를 돌아가면서 담당하거나 造幕 한 가지를 영구히 頒下해주거나 兩端 가운데 하나로 處分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없애주도록 行下할 것을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⁸⁷⁾

망치·양화 3동과 공동으로 조막역을 지고 있는 구조라민들은 지세포·옥포·조라 등 3진의 搜討役에 인력과 물자를 징발당하는 것만으로도 과중한 부담이라고 하면서 전임 거제부사에게 호소하여 조막역의 탈급을 허락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 놀란 망치와 양화 두 마을은 재빠르게 거제부사에게 정소하여 이를 다시 뒤집고 조막역을 전과 같이 3동이 함께 담당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아내고 있다. 당황한 구조라민들은 3진에 올린 소지를 첨부, 거제부에 정소를 올려 조막역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을 상기시키면서 3진 搜討를 세 마을이 돌아가면서 담당하거나 造幕役을 영구히 頒下해주거나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던 것이다. 거제 부사는 구조라민들의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망치·양화 두 洞에서도 따로 부담하는 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이들이 다시 정소하는 것을 보고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⁸⁸⁾ ‘鎮下項里居民’의 명의로 구조라민이 지세포 만호에게 올린 등장은 다음과 같다.

87)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53~554면).

88)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53~554면).

倭船이 栗浦과 本里(구조라) 경내에 漂着하면 本鎭(지세진)의 守護 등의 절차와 大同給料·學官問情時에 원래 供饋의 규례가 있지만 백성을 이끌고 護送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막중한 搜討處인 內島와 外島가 本里 경내에 있기 때문에 知世浦·玉浦·助羅浦 3진이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월 3巡의 巡邏에 船格을 等待하는 과정에 폐단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苦癘은 다른 洞里와 自別하지만 不悛한 例입니다. 그러나 望峙·楊花 두 마을로 논한다면 곧 ‘松下之屬’으로 이러한 한 가지 폐단은 없습니다. 本府의 所關인 戰器를 新造할 때의 造幕役 한 가지는 저 두 마을과 함께 仰役하는 것이 실로 억울하기 때문에 감히 이같이 齊訴하오니 參商한 후 이같은 獨弊의 狀을 이치로 따져 各樣造幕 한 가지는 頒給할 뜻으로 移文成送할 것을 行下해주시시오.⁸⁹⁾

여기에서도 구조라민들은 3개 마을이 왜선에 대한 守護業務와 각종 供饋를 공동으로 담당하는데 반해 자신들이 여기에 더해 內島와 外島에 대한 월 3巡 搜討에 사격이 等待하는 역을 추가로 맡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이므로 자신들은 조막역에서 탈급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3진의 만호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태도였다. 가령 지세포 만호는 자신도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거제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거제부사에게 面稟할 것이니 처분을 기다리라고 답하고 있다. 옥포진과 조라포진 만호의 반응도 비슷했다.⁹⁰⁾

3동의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분열되었던 3개 동은 이후 일정한 협의를 거쳐 조막역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듯 하다. 거제부사가 주저하는 사이 3동은 이제 연명으로 감영에 의송을 올리고 있었다. 여기에서 3동민은 조막역의 문제점을 설명한 후 선박을 만들 때 소요되는 물자와 장비를 영·읍·진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조막역도 營·邑·鎭의 솜씨 좋은 기술자(善手)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임의로 이를 각洞에 배정하는 것은 마을민들을 곤궁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감영에서는 耳匠幕은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鎭에 인접한 마을 한 곳을 지목하여 사역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부담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이들을 안정시키라고 지시하였다. 3동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처사였다.

89) 『鎭下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56~557면).

90)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58면); 『項里居民等狀』(『고문서집성』 35, 555면).

감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고심하던 거제부사는 다시 3동민의 의송을 접하게 된다. 여기에서 3동민은 감영의 지시와 마찬가지로 역을 면제해주거나 역을 다른 洞里로 옮겨주길 요청한 듯 하다. 이에 거제부사는 ‘이러한 民心은 모두 役을 없애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것이나 役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해당 민들이 매번 다른 洞에 役을 옮겨줄 것을 청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되니 다른 洞이 그 고통을 기꺼이 받겠는가?’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하였다. 거제부사가 제시한 대안은 조막역을 耳匠과 沙格들이 전담하는 방안이었다. 거제부사는 감영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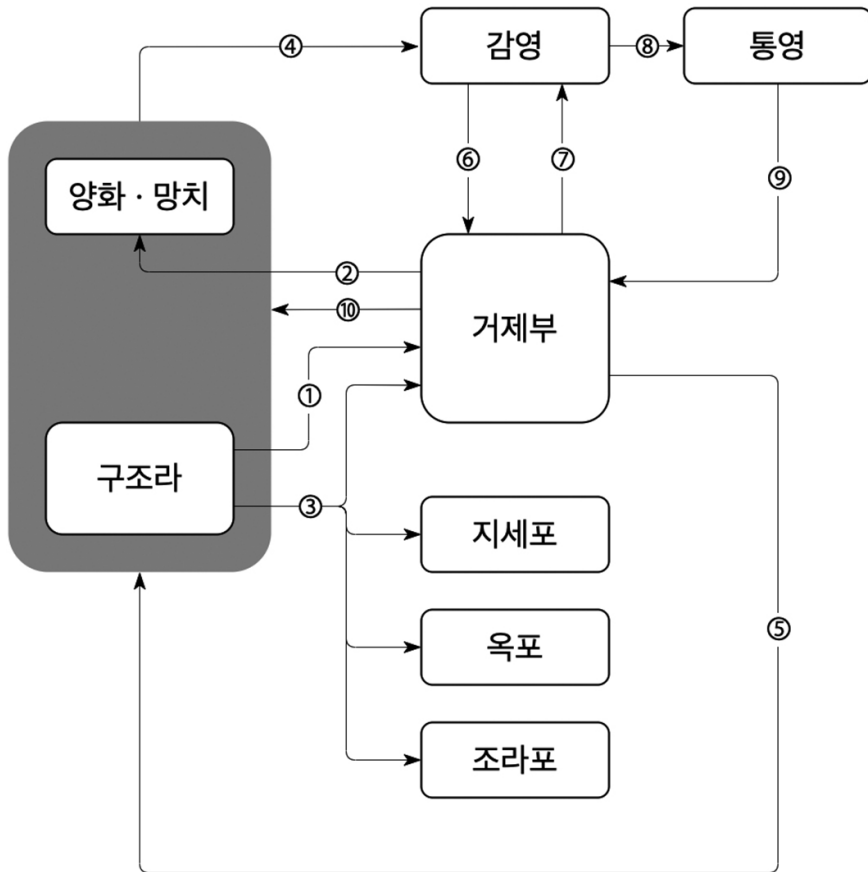
造幕役을 造船과 一體로 耳匠・沙格等處에 전적으로 責擔하는 것이 무방한 듯 하지만 본래 前例가 없는 일이라 쉽게 施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訓局船과 統營八戰船은 사안이 上營과 관계되어 本官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는 바 이러한 造船役은 統營에서 專管하므로 지금부터 이른바 耳匠幕・沙格幕은 반드시 各該 耳匠・沙格 등이 받은 役價 중에서 雇人을 세워 行할 뜻을 營門에서 정식하여 統營에 왕복하는 것이 어떠한 지 參商하여 處分할 일.⁹¹⁾

하지만 거제부사가 이를 혼자 처결하기는 힘들었다. 전례가 없는 사안으로 여기에는 훈련도감・통영과 같은 상급기관도 얹혀있었기 때문이다. 造船役 자체가 통영 소관이므로 거제부사의 방안을 감영에서 定式한 후 이를 통영에 보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감영은 이를 수락했으나 통영의 입장은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3동민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은 거제부에서 절목을 작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⁹²⁾ 1828년 6월 3동에 내려온 『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에서 조막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대저 造幕도 역시 선박제조와 관련된 일이다. 造船匠들은 이미 役價를 받고 배를 만드는 자들이므로 造幕役을 平民에게 편파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민에게는 贅役이 된다. 지금부터 訓鍊都監船・統營八戰船과 渡海船・巨濟府一二戰船을 새로 만들 때 耳匠과 沙格 등의 造幕 한 가지는 각기 耳匠과 沙格 등이 만들

91) 『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고문서집성』 35, 92~95면).

92) 『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고문서집성』 35, 92~95면).



〈그림 3〉 3洞 조막역 문제의 등소와 해결과정

- ① 구조라민들이 거제부에 조막역탈급 요청과 완문발급
- ② 양화 · 망치의 구조라조막역 탈급 저지, 3동 공동부담으로 환원
- ③ 구조라민들이 거제부와 3진에 조막역의 부담함 호소
- ④ 3동이 감영에 공동의송으로 조막역에 대한 대책 요구
- ⑤ 3동이 거제부에 공동의송으로 조막역에 대한 대책 요구
- ⑥ 감영이 거제부에 조막역 해결 지시
- ⑦ 거제부가 감영에 통영과의 의견조율 요청
- ⑧ 감영과 통영의 의견조율
- ⑨ (통영의 허가)
- ⑩ 절목의 정식

도록 하고 各該洞을 侵漁하지 말도록 하는 뜻으로 이같이 절목 2건을 만들어 한 건은 官에 올리고 한 건은 各該洞에 出給하니 이에 의거하여 준행하고 영구히 바꾸지 않는 것이 宜當하다.⁹³⁾

造幕이 선박제조에 수반되는 일이므로 役價를 받고 동원된 耳匠·沙格 등이 직접 막사를 만들도록 하고 3동민들은 여기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아마 이장·사격의 役價 일부로 雇立을 통해 造幕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갖가지 세역에 시달리던 3동민에게 부과된 조막역은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그 해결도 이 같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했다.

조막역으로 인한 부담의 강도는 구조라의 동전지출 내역을 통해 엿볼 수 있다. 1826년 구조라의 洞錢 지출에서 조막역 명목으로 지급한 항목은 42.45냥으로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진상이 139.2냥(31.5%)이고 나머지는 동중행사나 동임인건비·부조 등과 관련된 항목이다. 조막역을 둘러싸고 집요하게 전개된 구조라와 망치·양화 3동간의 갈등과 등소는 어찌보면 당연했다.⁹⁴⁾ 더구나 조막역 분쟁이 있었던 해 ‘造幕事載完文下記’라는 명목으로 11.5냥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조막역 분쟁과 관련된 비용도 洞錢에서 지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⁹⁵⁾

이상 조막역과 관련된 분쟁의 경과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 이미 전임부사에게 정소하여 조막역을 탈급받은 구조라가 조막역의 공동부담에서 이탈하려 하자 양화·망치는 거제부에 이러한 방침의 재고를 요청하여 이를 저지하고 있다. 이에 구조라민들은 인근 3개 수군진과 거제부사에게 다시 정소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서로 갈등하던 구조라와 망치·양화는 이제 일정한 합의를 거쳐 조막역의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기에 이른다. 3동은 보다 상급기관인 감영에 등소를 올려 조막역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감사의 재가까지 얻어낸다. 감영의 지시가 내려옴과 동시에 3동민은 다시 의송을 통해 거제부사를 압박하였고 부사는 고심 끝에 조막역을 장인에게 맡기거나 역가를 통해 고립하기로 결정한다. 결정사항

93) 『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고문서집성』 35, 92~95면).

94) 『洞錢流音冊』(『고문서집성』 35, 106~205면).

95) 『洞錢流音冊』(『고문서집성』 35, 160~205). 이 시기 구조라 '洞中'의 洞錢의 운영에 대해서는 송양섭, 「19세기~20세기 초 거제 구조라리의 '洞中'과 洞錢의 운영」, 『한국문화』 9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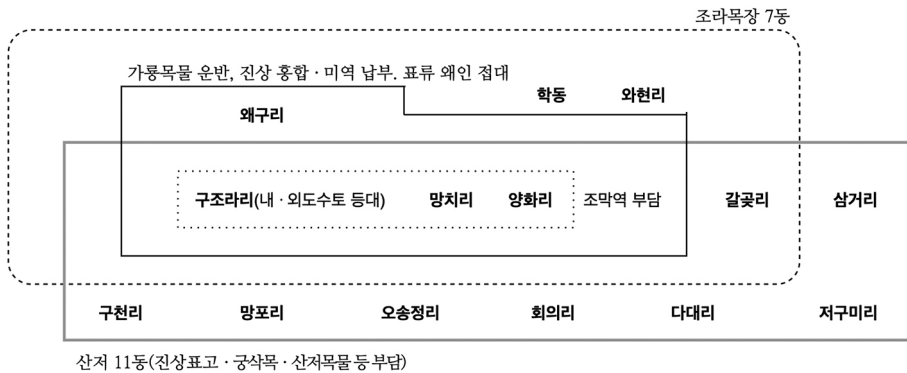
은 감영에서 定式되어 통영의 동의를 얻은 후 거제부사에 의해 절목으로 작성되어 시행되는 절차를 거쳐야했다. 조막역의 부담을 둘러싸고 3동은 대립과 협력을 거쳐 여러 경로로 각급기관에 호소하여 거제부사로부터 끝내 해결책을 얻어냈던 것이다. 거제부의 입장에서 조막역의 해결은 인근의 수군진·감영 그리고 통영과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⁹⁶⁾

IV. 맺음말

한반도 동남단의 도서지역으로 군사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거제도에는 중앙과 지방의 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부세·잡역이 가해졌다. 구조라는 홍합·표고 등을 비롯한 진상 물자를 상납하고 통영 인근 3개 수군진의 명령에 따라 일본 표류 선박에 대한 구호작업에 동원되었다. 또한 내·외도 수토에 소요되는 물자와 인력을 징발해야했다. 洞錢에 나타난 마을 자체의 지출은 別神祭에 대한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조라가 소속된 거제의 면리편제는 19세기로 접어들어 面數가 증가하는 가운데 里數는 감소를 거쳐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거제와 구조라의 호구수가 19세기 말 반 이하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인구요인은 면리편제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없다. 자연촌락은 행정편제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묶여지거나 와 구조라와 인근 촌락의 合洞과 分洞 양상을 통해 지적할 수 있는 면리재편의 중요한

96) 이 때 만들어진 절목은 이후 조막역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 근거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1838년 조막역의 재부과가 그것으로 이 때 망치 里任은 절목을 근거로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첩정」[『고문서집성』 35, 544면]). 1854년에도 渡海船을 새로 만드는 耳匠들의 造幕에 대한 전령이 도착했을 때도 3동민들은 절목을 근거로 시정을 받는다(『項里望峙楊花三里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31면]). 3동의 공동대응은 이뿐 아니었다. 1821년 통영의 漁條用杖木曳運 지시에 대해 杖木을 채벌할 곳이 없다고 영문에 보고한 것(「전령」[『고문서집성』 35, 473면]), 그리고 1849년 경내 松田에 지세진의 眞木監官이 차출되어 3洞을 侵刻하므로 이를 없애줄 것을 요청한 것(『項里望峙楊花等里狀』[『고문서집성』 35, 560면]) 등이 그 사례이다. 이 가운데 진목감관 혁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3동민들은 1858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서목을 올렸으나 거제부사의 태도는 완강했다. 이 때 부사는 이들의 眞木偷賣를 강하게 의심하면서 ‘어찌 眞木이 없는 산이 있겠는가? 각별히 探索하여 現發抵罪의 폐단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거부부사를 분명히 하였다(『項里望峙楊花里任書目』[『고문서집성』 35, 536면]).

요인은 각종 부세부담과 관련되어 일정한 수취단위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실무를 담당한 이서조직은 개별 동리와의 이해에 따라 부세·잡역을 매개로 계방과 같은 결사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촌락간의 횡적인 관계나 관과의 종적인 결사 공히 부세·재정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4〉 19세기 중엽 거제도 촌락군의 세역별 부담양상

구조라와 인근의 촌락사회는 면리제에 의해 편제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별도로 지역의 각급기관으로부터 가해지는 항목별·물종별 각종 부세·잡역을 촌락군으로 나누어 공동부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分洞·合洞 등 동리재편도 수반되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막역에 3개 마을, 진상표고 납부에 11개 마을, 미역·홍합 상납, 가롱목물 운반, 표류왜선 접대에 4개 마을, 목장 소속으로 7개 마을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세역 부담단위가 되었는데 때로는 면의 편제를 넘어서기도 했다.⁹⁷⁾ 가령 진상표고를 부담한 ‘산저 11동’ 가운데 4개 촌락은 일운면 소속이었고 7개 촌락은 읍내면 소속이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범주의 세역단위에 중복 편제되거나 하나의 세역 단위에 거제부·통영·수군진 등 각기 다른 기관의 세역이 함께 부과되는 현상도 포착된다. 얼마간의 조정이 있었겠지만 세역 단위로 묶인 촌락군에

97) 복수의 촌락을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 세역을 수취하는 방식은 19세기 동래부의 사례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포착된다. 이에 대해서는 송양섭,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면중’과 잡역운영」, 『역사와 현실』 112, 한국역사연구회, 2019 참조.

대한 각급기관의 중첩적인 지배는 관권의 개입과 압력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촌락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촌락내부의 운영도 이러한 관권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개별 촌락은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세목의 부담을 둘러싸고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하는 처지였다. 표고진상에서 구조라를 제외시키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갈등의 봉합과정이나 홍합·미역에 대한 偷採·潛採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세역의 공동부담으로 묶여진 촌락군은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외부적 요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느슨한 협의체적 유대를 맺고 있었다. 가룽목물 운반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세역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치우침 없는 촌락 간 공정하고도 균평한 부담이었다. 애초 촌락군의 구획도 그러했지만 이들간 이해의 충돌이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이 나서 중재역을 하고 있다. 촌락 간의 대소 사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도 관의 개입이나 추인이 거의 상시적으로 뒤따랐다. 마을 내의 주요사안들은 洞任들에 의해 수시로 관에 보고되었고 각종 합의 문서는 관의 인증을 통해 공신력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부세를 매개로 넓어진 관과의 접촉면은 계방과 같이 이서집단과의 사적인 결사가 맺어지는 토양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19세기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된 민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를 준다. 이 시기 활발히 나타나는 등소운동은 각급 기관의 책임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앙까지 올라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등소의 내용은 여러 가지였지만 부세운영과 관련된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그 대상은 중앙·지방, 행정·군사기관을 가리지 않았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들 촌락사회의 움직임은 그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 조막역 분쟁을 둘러싼 3개 마을의 집요한 등소활동은 그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거제부의 입장에서도 조막역의 해결은 인근의 수군진·감영 그리고 통영과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권의 침투는 개별촌락의 자율성을 저해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파편화·원자화되지 않고 스스로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일견 수동적이고 즉자적일 수 있음에도 부세문제를 둘러싸고 관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촌락사회가 스스로 결집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간 점은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지적되어도 좋을 것이다. 이같이 강력한 관권의 침투는 이에 대응한 동리간의 수평적 연대를 통해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창출해내고 이는 지역사회 운

영을 위한 일상적 정치문화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⁹⁸⁾

투고일: 2021.04.10

심사일: 2021.06.03

게재확정일: 2021.06.14

- 98) 구조라 마을 내부에서 '동중'의 명의로 부세·잡역을 비롯한 각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동전의 운영의 구체적 양상은 송양섭, 「19세기~20세기 초 巨濟 舊助羅里的 '洞中'과 洞錢의 운영」 『한국문화』 94, 2021을 참고할 것. 한편 이러한 19세기 촌락사회의 동향은 중국과 일본의 촌락공동체의 특징과 관련하여 비교사적인 접근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 에도시대 무라(村)는 고유한 공간범위가 있고 거주지·경지·비경지의 구분이 분명하며 단체성도 뚜렷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촌락의 경계가 없고 촌락자체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의 무라는 공동업무 뿐 아니라 건축·관혼상제 등 개별가족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도 수행했다. 농업재생산을 위한 공동재산이 존재했고 공동노동조직도 발달했다. 반면 중국은 소극적인 공동업무가 존재했으나 대부분의 업무는 사적으로 개별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일본의 무라는 결정과 집행을 주관하는 기구가 있어 빈번한 회합을 가졌지만 중국의 경우, 전체적인 집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촌락 내 대표성을 가진 조직도 미약했다. 일본의 무라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강한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반면 중국의 촌락은 개방적이어서 그 공동체성은 매우 희박했다(足立啓二, 『專制國家史論-中國史から世界史へ』, 栢書房, 1998). 조선의 경우 촌락운영의 특징에 대한 실증적·이론적 여백은 여전히 커 보이지만 피상적으로나마 살펴본다면 일부 일본의 공동체성을 보이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적 개방성에 보다 근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촌락의 결속도나 강력한 관권의 개입, 그리고 세역을 둘러싼 상시적 이합집산 등 거제지역 촌락사회가 보여주는 특징이 비교사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보다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35, 1998

『三道水軍統制使節目』

『호구총수』 『嶺南廳事例』

『各里進上軍民節目』(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

『거제부읍지』(1860~1862)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內部警務局, 『民籍統計表』, 1910

송기중, 『조선후기 수군연구』, 역사비평사, 2019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足立啓二, 『專制國家史論-中國史から世界史へ』, 栢書房, 1998

김준형, 「조선후기 면리제의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김 혁, 「조선후기 ‘완의’ 문서의 특성과 그 사회적 기능-거제부 구조라리의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63, 역사실학회, 2017

김현구, 「조선후기 통제영의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통영곡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3

_____, 「18·19세기 거제부의 해세운영과 민고」, 『부대사학』 19, 부산대사학회, 1995

_____, 「조선후기 조선업과 조선술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81, 국사편찬위원회, 1998

_____, 「조선후기 연해민의 생활상-18~19세기 거제부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8, 부경역사연구소, 2001

송기중, 「균역법 실시 이후 통영곡 운영의 변화」, 『한국문화』 6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_____, 「17~18세기 통제영의 방어체제와 병력운영」,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송양섭,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계방의 출현-제역 및 제역촌과 관련하여」, 『역사와 담론』 59, 호서사학회, 2011

_____, 「19세기 거제도 구조라 촌락민의 직역변동과 가계계승 양상-『항리호적중초』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_____,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면중’과 잡역운영」, 『역사와 현실』 112, 한국역사학회, 2019

- _____, 「19세기~20세기 초 巨濟 舊助羅里的 ‘洞中’과 洞錢의 운영」, 『한국문화』 9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 이종길, 「호적자료를 통해 본 조선후기 어촌사회의 가족관계-거제도 구조라 ‘항리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57,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_____, 「19세기 巨濟島 ‘項里’ 漁村社會相에 대한 一考-‘巨濟島舊助羅’ 古文書を 중심으로」, 『장서각』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이훈상, 「19세기 중엽 이후 거제 통영 지역의 별신굿 연행과 기록문화전통의 창출」,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016
- 전민영, 「18세기말~19세기 海村의 공동납운영 방식」, 『고문서연구』 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 _____, 「19세기 舊助羅里 마을 고문서와 공동생활 방식-旅客主人 · 漁條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 정성일, 「조선의 대일관계와 거제사람들-1830~80년대 거제부 구조라(항리) 주민의 대마도 난파선 구호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 정순우 · 안승준, 「거제도 구조라리 고문서와 그 성격」 『고문서집성』 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최주희, 「15~16세기 別進上의 상납과 운영-강원 · 경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6, 고려사학회, 2012

Management of Taxation in Gujora-ri, Geoje, in the 19th century and the Trend in the Village Community

Song, Yang-seop

In the 19th century, the village of Gujora-ri and its neighborhood were exposed to burdens from various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Regional natural villages including Gujora were organized in several forms for the administration, where it mattered if one could maintain its independence as a unit for taxation collection. The village society in Gujora and its neighbors paid various taxation and miscellaneous corvee jointly, and this routinized the pressure and intervention from the official authority. As seen in the cases like dissolving the conflict in the local tribute of shiitake mushrooms or responding to illegal foraging of mussels and seaweeds, the cluster of villages organized for the payment of taxation and corvee had a type of bond in concert for the coordination of inner opinions and communal response to outer factor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managing the taxation and corvee of the community, as shown in the case of transportation corvee of wooden materials for shipbuilding, was the fair and equal distribution of burden among the villages. The accusation movement around the conflict on tent-building corvee shows that people of Gujora and its neighbors tried to accomplish their claim with an active political movement. On one hand, the permeation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disrupted the autonomy of individual villages, but, on the other hand, it became an opportunity for the villages to enhance their solidarity rather than to be atomized or fragmented. Thus, it can be argued that the strong permeation of official authority created an interdependent,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the villages through the horizontal solidarity as a response, and as a result, this became a significant motivating factor producing a daily political culture for the management of local community.

Key Words : Geoje island, Gujora, taxation, village, local tribute (進上), miscellaneous corvee (雜役), tent-building corvee (造幕役)

